제1부 통계적 분석

제1장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언론소송 판결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크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우선 연구의 범위부터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 대상 판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분석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중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침해를 이유로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 · 형사사건의 판결이다.

2) 판결 연구는 확정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1심 사건과 그 상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나, 본 연구 대상은 위 3년 기간 동안에 선고된 모든 언론소송 판결이다(위 기간에 상소심만 존재하는 경우 그 상소심 판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 판결로 처리된 사건이 대부분이나 결정(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된 조정사건도 포함시켰다.

4) '언론'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방송 ·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 ·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따라서 피고가 법 소정의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은 모두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언론사 또는 언론인과 함께 공동으로 피소된 인터넷 포털사와 언론사 닷컴(홈페이지)은 언론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언론으로서의 책임부여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5) 민사의 경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기사삭제, 배포 내지 방영 금지를 구하는 사건에 대한 판결을, 형사의 경우는 기소된 죄명이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로 한정하였다.[1)]

2. 자료 수집

법원은 2006. 5. 1.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 ·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판결의 수집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 · 열람 특별창구를 이용하여 검색된 판결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판결에 관한 검색어는 민사는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권 ⑥보도&성명권 ⑦보도&음성권 ⑧보도&사생활 ⑨보도&프라이버시 ⑩보도&퍼블리시티'로 하였고, 형사는 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②보도&명예훼손(결과내 재검색 : !출판물)'로 하였다.[2)] 판결 검색의 최종일은 2008. 1. 22.이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 보도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명예훼손 보도 행위에 대해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2007년 4월부터 판결을 선고한 해당 각급 법원에서 판결문을 검색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므로 2007년 4월 이후에 선고된 판결은 전수가 등록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1997년부터 2007년 3월까지는 전국 법원 중 61개 법원에서 선고한 판결 31,000여건을 등록한 상태이고 향후 확대하여 보완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분석대상 판결 중 2005년과 2006년 선고 판결은 상대적으로 적게 검색되었다.

판결문 수집은 검색 후 법원의 판결문 제공신청 제도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집된 판결은 민사사건 268건(76.8%), 형사사건 81건(23.2%)으로 모두 349건이다. 비록 전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선행 연구의 어느 표본보다도 방대한 양이어서 연구 결과의 신뢰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1-1〉 연도별 소송형태별 분석판결 건수

연 도	민사소송	형사소송	계(%)
2005	71	12	83(23.8)
2006	81	28	109(31.2)
2007	116	41	157(45.0)
합 계	268	81	349(100.0)

3. 분석 항목

가. 민사사건(42항목)

구성목록	구 성 항 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2. 선고일자	03. 법 원 명 04. 심 급	05. 청구의 종류 06. 침해유형	07. 인용된 침해유형
원 고	08. 원 고 명	09. 대표 원고 분류	10. 공적인물 분류	
피 고	11. 사건 피고명 12. 사건 피고구성	13. 매 체 명 14. 매체별 피고구성	15.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결과	
매체분류	16. 대 분 류 17. 세부분류	17-1. 일간지 종별 분류	17-2. 방송 분류	17-3. 인터넷매체 분류
보도내용 분류	18. 보도내용 분류	18-1. 방송 외 기사유형	18-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구별 처리결과	19. 청구별 처리결과	19-1. 정정보도 19-2. 반론보도	19-3. 손해배상 19-4. 기 타	
원·상소심 결과	20. 심급별 결과	20-1. 1심 20-2. 항소심	20-3. 상고심 20-4. 파기환송심	
기 타	21. 원고 원심유지 여부 22. 사건 특성	23. 조정신청 여부 24. 조정신청 결과	25. 보도일자(언론중재법 시행 기준)	
손해배상	26. 사건 청구액 27. 사건 인용액	28. 매체별 청구액 29. 매체별 인용액	30. 손해배상 기각사유	
반론보도	31. 반론 기각사유	32.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33. 보도시기 34. 보도 지면/프로그램 35. 보도위치 36. 보도제목	37. 활자크기 명시 여부 38. 정기간행물의 보도문 크기 39. 정기간행물의 상자기사 명시 여부 40. 보도횟수 명시 여부	41. 방송프로그램 보도방법 42. 보도본문 길이	

2) &는 AND, +는 DR, !는 NOT의미

나. 형사사건(20항목)

구성목록	구 성 항 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2. 선고일자	03. 법 원 명 04. 심 급	05. 죄 명 06. 불법행위 유형
피 고 인	07. 사건 피고인 08. 사건 피고인 구성	09. 매 체 명 10. 매체별 피고인 구성	
매체분류	11. 대분류 12. 세부분류	12-1. 일간지 종별 분류	12-2. 방송 분류 12-3. 인터넷매체 분류
보도내용 분류	13. 보도내용 분류	13-1. 방송 외 기사유형	13-2. 방송 프로그램 유형
판결결과	14. 판결결과 15. 유죄선고 유형 16. 징역기간, 벌금액 등	14-1. 명예훼손 14-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14-4. 기 타
심급별 결과	17. 심급별 결과	17-1. 1심 17-2. 항소심	17-3. 상고심 17-4. 파기환송심
기 타	18. 원심유지 여부	19. 면책 사유	20. 사건 특성

4. 코딩 방법

코딩이란 수집된 자료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리하는 단계를 말한다. 사회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이 그렇듯이 판결문에 나타난 용어들이 복잡하고 포괄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변수값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코딩 설계에 따라 연구의 결과는 많이 달라지고 연구의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그 동안의 판결과 학설 등에서 꾸준히 나타난 개념을 바탕으로 판결에 사용된 용어를 개념적 · 조작적으로 정의한 후 자료를 분류하였다.

가. 민사사건

민사사건 코딩의 기본 단위는 언론매체별이다. 1개의 소송 사건에서 피고가 다수인 경우 이를 매체별로 구분, 각 코딩하여 소송에 연루되는 매체별 현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대표 원고 분류

① 원고가 다수인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신청한 경우 단체로 분류하였다. 단, 사건의 특성상 개인으로 분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분류하였다.

▶ 연예인의 결혼설에 대해 연예인과 그 소속사가 신청한 경우는 개인으로 분류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③ 일반인과 공인이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하였다.
④ 공인 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하였다. 전직이라 함은 언론사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도를 했지만 현재는 원고가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⑤ 공직자는 판례에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 상의 공직자를 말한다.

▶ 국무위원 ·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2) 공적 인물 분류

공적 인물이란 연예인 · 정치인 · 기업가 · 언론인 등 저명성 있는 인물이거나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이 공적 관심사안인 사람을 말한다.

3) 매체명

① 청구취지에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 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는 경우 언론사 닷컴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하였다.

▶ 사건 피고가 법률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법률신문, 법률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청구를 하였다면 2개의 매체로 각 코딩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언론인 소속 매체명을 기재하였다.

4) 매체별 피고 구성

① 매체별로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기사를 직접 생산 · 편집한 기자나 프로듀서, 감독책임자 이외의 언론인(행정업무자 등)과 외주 제작사 및 소속 직원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5)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6) 방송 분류

① 중앙방송의 지역권 뉴스는 지방방송으로 분류하였다.
② 고발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 · 고발로 분류하였다.

▶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뉴스 후 등

③ 「9시 뉴스」 내 코너(현장추적 등)는 뉴스로 분류하였다.
④ 「KBS스페셜」,「미디어 비평」등은 교양 · 정보로 분류하였다.

7) 청구별 처리결과

① 원고 일부승소라 함은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감액 또는 감축된 경우, 여러 청구 중에 일부의 청구만 인용된 경우 즉,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항소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가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고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가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8) 원고 원심유지 여부

① 항소심의 원심은 1심, 상고심의 원심은 항소심을 말한다.

② 원고 원심유지 여부는 항소심과 상고심만을 조사하였고 파기환송심(환송후심)은 제외하였다.

9) 기타 사건의 특성

① 기타 사건의 특성은 대표 원고 분류(변수 9번)와 달리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에만 조사한 것이다.

② '원고를 공직자 또는 공적 인물로 판단', '보도의 공익성 부정', '모멸적 의견으로서 그 표현의 한계를 이탈' 로 분류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재판부가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경우이다.

10) 매체별 청구액(인용액)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동일 매체에 해당하는 청구액을 기재하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각 기재하였다.

②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에 합산하였다.

③ 항소심과 상고심도 항소취지액(소가)이 아닌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나. 형사사건

형사는 민사와 달리 언론사가 아닌 언론인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별 벌금액 · 징역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별로 코딩하되, 소속 매체별로도 분류하였다. 그 외 코딩방법은 민사사건과 같다.

제2장 민사사건 분석내용

1. 소송제기현황

1) 법원별 소송빈도

수집된 언론소송 판결 268건을 피고를 구성하고 있는 매체별로 분리한 매체별 빈도는 369건이다. 이 건수가 민사사건의 통계적 분석의 모수(母數)이다.

법원별로는 대법원이 48건(13.0%), 고등법원이 85건(23.0%), 지방법원이 236건(64.0%)이었다.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처리한 사건이 76건(89.4%)으로 대부분이었고, 대전 · 부산 고등법원이 각 4건, 광주고등법인 1건이었다.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생산한 판결이 142건(60.2%)으로 절반을 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37건(15.7%), 창원지방법원(관할 시법원 포함) 12건(5.1%), 서울서부지방법원 10건(4.2%) 등이었다.

〈표2-1〉 법원별 소송빈도

법원		빈도	비율(%)
대법원 (13.0%)		48	100.0
고등법원 (23.0%)	서울고등법원	76	89.4
	대전고등법원	4	4.7
	부산고등법원	4	4.7
	광주고등법원	1	1.2
	소계	85	100.0
지방법원 (64.0%)	서울중앙지방법원	142	60.2
	서울남부지방법원	37	15.7
	서울동부지방법원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	0.8
	서울서부지방법원	10	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	1.3
	수원지방법원	2	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0.8
	대전지방법원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	0.4
	대구지방법원	5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	0.4
	부산지방법원	4	1.7
	울산지방법원	1	0.4
	창원지방법원	9	3.8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3	1.3
	광주지방법원	2	0.8
	제주지방법원	1	0.4
	소계	236	100.0
합계		369	100.0

언론중재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정정보도청구등의 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로 되어 있다.[3]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이와는 달리 민사소송법에 의해 원고의 소재지 등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므로 '정정보도 ·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병합된 조정신청사건이 법원에 소제기될 경우 그 관할이 달라져 사건이 분리되어 진행되기도 한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소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 재판을 하고 있다.

2) 심급별 소송빈도

심급별 빈도는 1심이 212건으로 57.5%, 항소심이 109건으로 29.5%, 상고심이 48건으로 13.0%의 비율로 각 구성되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 판결이 85건,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이 24건이었다.

〈표2-2〉 심급별 소송빈도

심 급		빈 도	비 율(%)
1 심		212	57.5
항 소 심	고등법원	85	23.0
	지방법원	24	6.5
	항소심계	109	29.5
상 고 심		48	13.0
합 계		369	100.0

3) 상소율

1심 판결 212건 중 항소하지 않고 종결된 사건은 137건(64.6%)이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75건으로 항소율은 35.4%, 항소심 판결 109건[4] 중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47건으로 상고율은 43.1%로 나타났다. 상고한 판결 중 고등법원 판결은 33건, 지방법원 항소부 판결은 14건이었다.

〈표2-3〉 상 소 율

심 급		빈 도	상소건수	상소율(%)
1 심		212	75	35.4
항 소 심	고등법원	85	33	38.8
	지방법원	24	14	58.3
	항소심계	109	47	43.1

3)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 정정보도청구권이 민법 제764조 규정에 의한 권리로서 인정되던 때에는 1심 재판 관할이 반론보도나 추후보도청구 사건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정해짐.
4) 항소심 판결은 모두 109건으로 원심이 2005년 이전에 선고된 판결이 있음. 따라서 1심 사건 중 항소된 사건 75건과 차이가 있음.

4) 청구별 소송빈도

원고가 요구하는 피해구제방법인 청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가 201건(54.5%)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는 108건(29.3%)이었다. 이어 반론보도청구 19건(5.1%), 정정보도청구 14건(3.8%), 기타 손해배상청구 6건, 기사삭제청구 5건, 보도(배포 · 방송)금지 가처분 4건, 반론 및 손해배상청구 3건 순이었다.

기타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란 현행법상 언론매체로 분류되지 않는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닷컴, 법 소정의 인터넷신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런 사건은 연구범위에서 배제하였으나 예외적으로 포함시킨 사건),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과 같이 인격권침해 이외의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말한다.

기타 청구로서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과문을 요구하거나, 특정 중앙일간지의 주요면을 제외한 광고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한 사례, 신청인의 반론 내지 후속보도 형식을 사실보도라는 제목으로 청구한

〈표2-4〉 청구별 소송빈도

청 구 명	빈 도	비 율(%)
정 정	14	3.8
정정/반론/손해배상	1	0.3
정정/손해배상	108	29.3
정정/기사삭제	1	0.3
반 론	19	5.1
반론/손해배상	3	0.8
손해배상	201	54.5
손해배상/사과광고	1	0.3
손해배상/정정광고	2	0.5
손해배상/사실보도	2	0.5
기사삭제	5	1.4
기사삭제/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해명서보도	2	0.5
기타 손해배상	6	1.6
배포 · 방송 금지가처분	4	1.1
합 계	369	100.0

〈표2-5〉 청구별 소송빈도(각 청구별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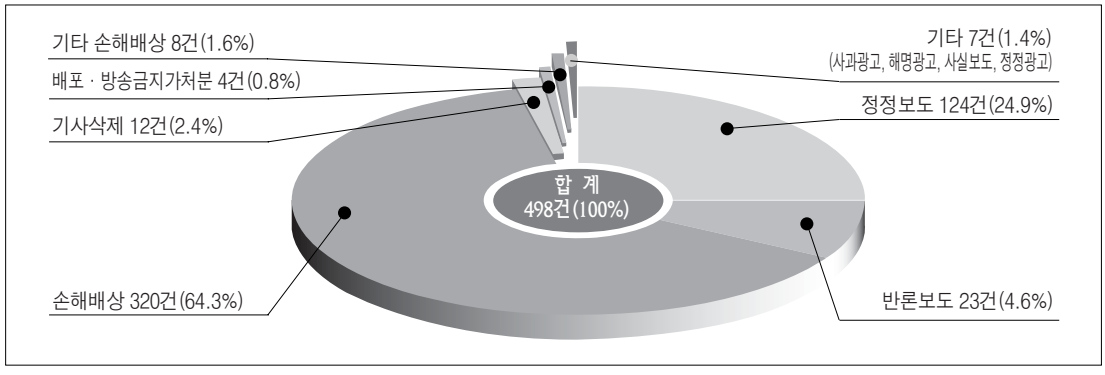

사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해명서라는 제목으로 보도해달라는 청구 등이 있었다.

정정 · 손배청구와 같이 병합청구된 사건을 분리하여 각 청구권별로 합산한 보니, 손해배상청구 320건(64.3%), 정정보도청구 124건(24.9%), 반론보도청구 23건(4.6%), 기사삭제청구 12건(2.4%) 등이었다. 피해구제방법으로서 주로 손해배상청구가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청구원인이 된 침해유형별 현황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다투는 명예훼손이 290건(78.6%)로 단연 많았고, 이어 명예 및 사생활침해 20건(5.4%), 명예훼손 및 초상권침해 19건(5.2%), 명예 · 초상권 · 사생활 침해 12건(3.3%) 순이었다. 명예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 3건,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침해를 주장하는 사건도 2건 있었다.

우리나라도 다른 대부분이 국가들처럼 초상권을 규정한 명문의 규정은 아직 없으나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인 특징을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서 인격권에 기초한 재산권적인 성격을 말한다. 미국 등에서는 양도성이 있는 재산권적 성격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아직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법원에서는 인격권으로 재산권적 측면의 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과 구분한 권리를 말한다. 기사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기사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기사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기사를 공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으로 구성된다.

〈표2-6〉 침해유형별 소송빈도

침 해 유 형	빈 도	비 율(%)
명 예	290	78.6
명예/사생활	20	5.4
명예/성명	2	0.5
명예/성명/사생활	1	0.3
명예/초상	19	5.2
명예/초상/사생활	12	3.3
명예/초상/음성	3	0.8
명예/퍼블리시티	3	0.8
사 생 활	2	0.5
저작권/저작인격권	2	0.5
초 상	7	1.9
초상/사생활	1	0.3
기 타	7	1.9
합 계	369	100.0

6)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매체유형별 소송 빈도는 방송이 29.8%, 일간신문이 27.9%로 비슷하였고, 인터넷 매체도 19.0%로 적지 않았다. 주간신문은 10.3%, 월간지는 8.1%, 뉴스통신은 4.1%였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종합일간지가 74(71.8%)건으로 소송 빈도가 가장 컸고, 방송 중에는 중앙방송이 86건(78.2%)으로 대부분 이었다.

인터넷 매체 중 법 소정의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매체는 70건 중 30건이었고, 언론사 닷컴이 27건, 포털사이트가 9건이었다.

〈표2-7〉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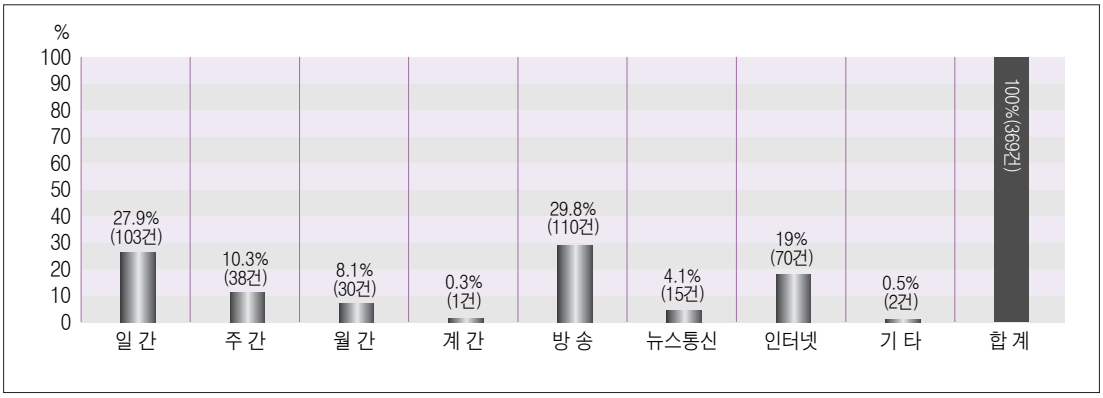

매 체 유 형		빈 도	비 율(%)
일 간	중 앙 종 합	74	71.8
	지 역 종 합	17	16.5
	일 반 경 제	12	11.7
	소 계	103	100.0
방 송	중 앙	86	78.2
	지 방	15	13.6
	민 방	1	0.9
	라 디 오	1	0.9
	케 이 블	5	4.6
	기 타	2	1.8
	소 계	110	100.0
인 터 넷	인터넷신문	30	42.9
	닷 컴	27	38.6
	포 털	9	12.8
	기 타	4	5.7
	소 계	70	100.0
주 간		38	10.3
월 간		30	8.1
계 간		1	0.3
뉴 스 통 신		15	4.1
기 타		2	0.5
합 계		369	100.0

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방송 외)은 252건 중 스트레이트가 201건(79.8%)으로 대부분이었고, 스트레이트 및 사설, 칼럼이 각 10건(4.0%), 인터뷰가 7건(2.8%), 사설, 사진, 인터뷰 및 사진이 각 5건(2.0%)이었다.

방송유형은 117건(언론사 닷컴과 포털사이트의 방송 프로그램 포함) 중 뉴스가 53건(45.3%), 교양 · 정보는 27건(23.1%), 뉴스 및 시사 고발이 10건(8.5%), 시사 · 고발은 8건(6.9%)이었으며 드라마도 6건(5.1%)이 있었다.

〈표2-8〉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보 도 유 형		빈 도	비 율(%)
방송 외	스 트 레 이 트	201	79.8
	스트레이트 /만평	2	0.8
	스트레이트/사설	10	4.0
	스트레이트/사설/만평	1	0.4
	스트레이트/사진	3	1.2
	스트레이트/칼럼	1	0.4
	사 설	5	2.0
	칼 럼	10	4.0
	인 터 뷰	7	2.8
	인터뷰/사진	5	2.0
	만 평	1	0.4
	사 진	5	2.0
	기 타	1	0.4
	소 계	252	100.0
방 송	뉴 스	53	45.3
	뉴스/시사 · 고발	10	8.5
	시사 · 고발	8	6.9
	시사 · 고발/교양 · 정보	2	1.7
	교양 · 정보	27	23.1
	드 라 마	6	5.1
	토 론	1	0.9
	기 타	10	8.6
	소 계	117	100.0
합 계		369	100.0

8) 사건 피고구성

보도가 잘못되었을 경우 해당 언론사 또는 담당 기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구성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건의 피고에는 언론사 단독이 77건(20.9%)으로 가장 많았으나, 언론사 다수 67건(18.2%), 언론사+언론인 다수 55건(14.9%), 언론사+언론인 45건(12.2%), 언론사 다수+비언론 26건(7.0%) 등이었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 중 언론인이 수명인 경우 '언론인 다수'라고 하고, 언론사가 수개인 경우 '언론사 다수'라 지칭하였다. 비언론이란 언론인이 아닌 제보자, 투고자, 기고자, 보도자료 배포자 또는 언론사가 아닌 단체 등을 말하는데 비언론이 피고에 포함된 경우는 68건(18.3%)으로 적지 않게 소송에 연루되고 있었다.

〈표2-9〉 사건 피고 구성

사건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 론 사	77	20.9
언론사/언론인	45	12.2
언론사/언론인/비언론	11	3.0
언론사/언론인 다수	55	14.9
언론사/언론인 다수/비언론	6	1.6
언론사/비언론	6	1.6
언론사 다수	67	18.2
언론사 다수/언론인	10	2.7
언론사 다수/언론인 다수	13	3.5
언론사 다수/언론인 다수/비언론	7	1.9
언론사 다수/비언론	26	7.0
언 론 인	18	4.9
언론인/비언론	9	2.4
언론인 다수	16	4.3
언론인 다수/비언론	3	0.8
합 계	369	100.0

9) 매체별 피고구성

매체별 피고 구성을 보면 언론사 단독이 180건(48.8%)으로 절반에 육박하여 두 건에 한 건은 언론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었다. 언론사+담당은 82건(22.2%)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언론사 대표 단독이 17건(4.6%), 언론사+국장+부장+담당이 10건(2.7%), 담당 기자(프로듀서) 단독이 9건(2.4%) 순이었다.

〈표2-10〉 매체별 피고 구성

매체별 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 론 사	180	48.8
언론사/대표	4	1.1
언론사/대표/국장/담당	6	1.6
언론사/대표/담당	6	1.6
언론사/편집인/담당	2	0.5
언론사/국장/담당	2	0.5
언론사/국장/부장/담당	10	2.7
언론사/부장/담당	3	0.8
언론사/담당	82	22.2
언론사/논설위원	6	1.6
대 표	17	4.6
대표/국장	4	1.1
대표/국장/담당	4	1.1
대표/담당	6	1.6
대표/기타	2	0.5
국장/담당	2	0.5
국장/기타	2	0.5
담당(기자 · PD)	9	2.4
기 타	8	2.2
그 외 구성	14	3.8
합 계	369	100.0

언론사가 소송에 연루된 빈도는 모두 311건(52.5%)이었다. 또한 언론인을 직위별로 합산해 보니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가 137건(23.1%)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 대표는 56건(9.5%), 편집국장 및 편집주간은 37건(6.3%), 부장이나 차장 등 데스크는 18건(3.0%)이었다.

언론사 대표는 매체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편집인이나 부장 · 차장 등은 기사의 취사 선택, 제목의 선정 배열 등 편집에 관여한 책임으로 담당 기자 및 프러듀서와 함께 공동으로 제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11〉 매체별 피고구성 (각 직위별 합산)

매체별 피고구성	빈 도	비 율(%)
언 론 사	311	52.5
대표이사, 발행인	56	9.5
편 집 인	6	1.0
편집위원(장)	2	0.3
논설위원, 주필	7	1.2
본 부 장	1	0.2
편집국장, 편집주간	37	6.3
부장, 차장(데스크)	18	3.0
담당(기자 · PD)	137	23.1
기 타	17	2.9
계	592	100.0

2. 재판 결과

1) 연도별 심급별 처리결과

재판 결과, 원고 승소율(원고 일부 승소 포함)은 43.4%, 원고 패소율은 56.1%로 집계되었다. 전체적으로 패소율이 승소율보다 12.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7년에 48.2%로 가장 높았고, 2005년 42.2%, 2006년 37.4%였다.

분석대상 판결 중 청구 인용시 원고의 청구(항소) 취지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모두 감축 또는 감액한 일부 승소로 나타났다.

심급별 원고 승소율은 1심에서는 44.8%,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는 다소 떨어진 38.5%, 상고심에서는 47.9%로 조사되었다.

〈표2-12〉 연도별 심급별 처리결과

연 도	심 급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조정성립(포기)	원고패	
2005	1심	23(41.8)		32(58.2)	55(100.0)
	항소심	8(38.1)		13(61.9)	21(100.0)
	상고심	7(50.0)		7(50.0)	14(100.0)
	소 계	38(42.2)		52(57.8)	90(100.0)
2006	1심	26(40.6)		38(59.4)	64(100.0)
	항소심	16(35.6)	2(4.4)	27(60.0)	45(100.0)
	상고심	1(16.7)		5(83.3)	6(100.0)
	소 계	43(37.4)	2(1.7)	70(60.9)	115(100.0)

연 도	심 급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조정성립(포기)	원고패	
2007	1심	46(49.5)		47(50.5)	93(100.0)
	항소심	18(41.9)		25(58.1)	43(100.0)
	상고심	15(53.6)		13(46.4)	28(100.0)
	소 계	79(48.2)		85(51.8)	164(100.0)
계	1심	95(44.8)		117(55.2)	212(100.0)
	항소심	42(38.5)	2(1.8)	65(59.6)	109(100.0)
	상고심	23(47.9)		25(52.1)	48(100.0)
합 계		160(43.4)	2(0.5)	207(56.1)	369(100.0)

※ ( )안의 숫자는 %

2) 청구별 처리결과

청구별 원고 승소율은 기타 손해배상사건을 제외하면 반론보도가 47.8%로 가장 높았고, 손해배상사건이 그 뒤를 이은 43.4%였다. 기사삭제는 33.3%, 배포 · 방송금지 가처분이 25.0%, 정정보도가 23.4%였다.

정정보도의 원고 패소율이 75.8%로 기타 사건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정정보도 기각사유는 진실성 또는 상당성 인정이 가장 많았으나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은 인용하면서도 별도의 정정보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결도 19건이나 되었다. 이 중에는 보도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로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몇 건 보였는데, 상당한 기간으로서 보도일로부터 1년 10여개월이 지났다거나, 5년여가 지났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하였으나,[5] 명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보도일로부터 선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보니 1년 3개월,[6] 1년 8개월[7] 등이었다.

정정보도청구사건 중 각하된 건은 우리 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합의한 사안으로 원고가 동일한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각하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항은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민법 제764조에 의해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권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화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화해를 변론조서 · 변론준비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조정합의 이후 소제기는 조정합의가 가지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8]

기사삭제 청구는 인터넷신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뉴스통신사를 상대로 한 것이 1건이었는데,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뉴스통신사에게 데이터베이스 등 저장매체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도록 명하였다.[9]

배포 · 방송 금지가처분이란 침해가 예견되는 보도에 대해 보도 전에 청구하는 예방차원의 조치를 말하는데 분석대상 판결 중 1건만 인용되고 3건이 기각되었다. 보도금지 가처분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을 인용한 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4가합12160, 2004가합19373(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4601 판결
6) 광주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가합892 판결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7. 5. 선고 2004가합12371 판결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9. 선고 2005가합10390 판결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것이어서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소명이 요구"되므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였다.[10] 인용된 1건은 원고의 청구취지는 해당 방송 일체를 금지해달라는 것이었으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대화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명을 직접 거론하여 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인용(조건부 방송 가능) 판결이었다.[11] 금지청구는 보도 예정일이 촉박한 시기에 청구되는 성격상 위 인용된 사건은 사건 접수 당일에 선고되었다.

기타 사건으로 "사죄광고는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 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12]는 이유로, 해명광고(저작권 위반 사실을 밝히는 내용)를 주요일간지 5개 매체의 광고란에 보도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13]하다는 이유로, 사실보도문(반론보도 내지 후속보도 형식) 청구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14]는 이유로, 정정광고 청구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위하여 손해배상 이외에 특별히 정정광고의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15]는 이유로 각 기각하였다.

〈표2-13〉 청구별 처리결과

청 구 명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조정성립(포기)	원고패	각 하	
정정보도	29(23.4)		94(75.8)	1(0.8)	124(100.0)
반론보도	11(47.8)		12(52.2)		23(100.0)
손해배상	139(43.4)	2(0.6)	179(55.9)		320(100.0)
기사삭제	4(33.3)		8(66.7)		12(100.0)
배포 · 방송금지가처분	1(25.0)		3(75.0)		4(100.0)
기타 손해배상	4(50.0)		4(50.0)		8(100.0)
기타(사죄광고, 해명광고, 사실보도, 정정광고)			7(100.0)		7(100.0)
합 계	188(37.8)	2(0.4)	307(61.6)	1(0.2)	498(100.0)

※ ( )안의 숫자는 %

3)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을 집계해 보니, 명예훼손이 전체 평균과 같은 43.4%였고, 명예훼손과 초상권을 동시에 침해한 경우가 57.9%였으며, 초상권 단독 침해는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는 빈도수가 적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초상권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장애인의 모습을 당사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촬영하여 보도한 경우,[16] 외주제작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프로그램이 초상권을 침해한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9. 선고 2006카합651 판결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5카합1743 판결
12) 광주지방법원 2007. 12. 14. 선고 2007가합4624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2006. 11. 29. 선고 2006나2355 판결
14)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6나72026 판결
15) 대전고등법원 2006. 9. 7. 선고 2003가합3644 판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합108300 판결

경우 방송사에 최종적인 편집권한이 있으므로 방송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사례,[17]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 등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으나 조건과 달리 얼굴과 신체모습, 실명,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18] 송년회 주최측의 동의는 받았으나, 초상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한 경우 등[19]이었다.

법원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초상권침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들이 피고의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제지나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내용이 부정적이지 않고 유쾌한 행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취재 및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측 담당자가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

반면 초상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공적인 쟁점에 관한 토론회(행정관청 개최)에서 이루어진 행동에 관한 영상으로서 촬영된 참가자들의 모습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영상이 아닌 당해 토론회 관련 내용과 함께 보도된 경우,[21]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인에 대한 직무와 관련된 보도일 경우[22] 등이었다.

보도내용과 관계 없는 원고 회사의 상호, 로고, 전화번호, 전경 등을 방영하여 오인하게한 보도도 있었는데 이 경우 판결은 상호권을 초상권과 비슷한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법리는 없었고 명예 또는 신용훼손의 일환으로 판단하였다.[23]

사생활 침해를 부인한 사례로는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제작, 방영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미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24] 일반 대중들에게 사회 저명인사(기업 대표)로 인식

〈표2-14〉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조정성립	원고패	
명 예	126(43.4)	2(0.7)	162(55.9)	290(100.0)
명예/초상	11(57.9)		8(42.1)	19(100.0)
명예/초상/음성	3(100.0)			3(100.0)
명예/초상/사생활	4(33.3)		8(66.7)	12(100.0)
명예/성명	1(50.0)		1(50.0)	2(100.0)
명예/성명/사생활	1(100.0)			1(100.0)
명예/사생활	3(15.0)		17(85.0)	20(100.0)
명예/퍼블리시티			3(100.0)	3(100.0)
초 상	6(85.7)		1(14.3)	7(100.0)
초상/사생활	1(100.0)			1(100.0)
사 생 활	1(50.0)		1(50.0)	2(100.0)
저작권/저작인격권	2(100.0)			2(100.0)
기 타	1(14.3)		6(85.7)	7(100.0)
합 계	160(43.4)	2(0.5)	207(56.1)	369(100.0)

※ ( )안의 숫자는 %

17)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가합9577 판결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가단56477 판결
20) 위 판결
21) 대전고등법원 2006. 9. 7. 선고 2006나3644 판결
22)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14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23) 대전지방법원 2006. 1. 18. 선고 2004가합260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가합14166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가합892 판결
24) 서울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46767 판결

된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 있는 사생활에 관한 보도 등이었다.[25)]

4) 원고유형별 처리결과

원고 유형별 승소율은 일반인이 55.9%로 가장 높았고 기타 일반단체가 22.2%로 가장 낮았다(빈도 4건 이하 제외). 공직자는 51.9%, 국가기관은 38.5%, 언론사는 36.0%, 종교단체는 30.0%, 공적인물과 기업체는 26.1%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인에 대한 사건에서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로 폭넓게 허용된다"[26)]거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그 사안이 공적 사안인지 사적 사안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 두어야 한다"[27)]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언론사인 사건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는 넓어야 하고,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28)] "언론사간 비판은 여느 공인 또는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29)]는 입장을 줄곧 밝히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64.0%)한 사건이 많았다.

〈표2-15〉 대표 원고 유형별 처리결과

대표원고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조정성립	원고패	
공 직 자	27(51.9)	2(3.9)	23(44.2)	52(100.0)
공적인물	23(26.1)		65(73.9)	88(100.0)
일 반 인	76(55.9)		60(44.1)	136(100.0)
공공단체			2(100.0)	2(100.0)
교육기관	2(100.0)			2(100.0)
국가기관	5(38.5)		8(61.5)	13(100.0)
기 업	6(26.1)		17(73.9)	23(100.0)
시민단체	4(100.0)			4(100.0)
언 론 사	9(36.0)		16(64.0)	25(100.0)
종교단체	3(30.0)		7(70.0)	10(100.0)
지 자 체	1(33.3)		2(66.7)	3(100.0)
기타 일반단체	2(22.2)		7(77.8)	9(100.0)
정 당	2(100.0)			2(100.0)
합 계	160(43.4)	2(0.5)	207(56.1)	369(100.0)

※ ( )안의 숫자는 %

또한 종교단체가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4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갖는 것으로서, 종교목적의 언론 · 출판의 경우 고도의 보장을 받으며, 다

25) 서울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47227 판결
26) 서울고등법원 2007. 12. 12. 선고 2006나117318 판결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2875 판결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 25. 선고 2006가합11556 판결
29)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4나85035 판결

른 종파를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는다"[30], "이단이라는 표현은 종교적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31]고 판시하였다.

공적 인물 중에는 연예인의 승소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피해자가 연예인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인이라고 하여 보도내용과 관련이 없는 범죄경력 보도는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의사실 보도가 유죄의 인상을 줄 염려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원심을 확정하였다.[32]

〈표2-16〉 공적 인물에 대한 처리결과

공적인물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연 예 인	6(40.0)	9(60.0)	15(100.0)
언 론 인	5(19.2)	21(80.8)	26(100.0)
기 업 가	1(11.1)	8(88.9)	9(100.0)
기 타	11(28.9)	27(71.1)	38(100.0)
합 계	23(26.1)	65(73.9)	88(100.0)

※ ( )안의 숫자는 %

5)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주간신문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율이 68.4%로 가장 높게,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의 뉴스통신매체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66.6%로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월간지가 46.7%, 인터넷 매체가 45.7%, 방송이 44.5%였다. 일간신문은 28.2%로 낮았다.

일간지의 원고 승소율은 지역종합일간지(41.2%), 중앙종합일간지(25.7%), 일반경제지(25.0%) 순이었고, 방송의 원고 승소율은 일간지와는 대조적으로 중앙방송(46.5%)이 지방방송(26.7%)보다 높았다. 그 이유는 지방 방송의 경우 자체 편성 보다는 중앙 방송을 그대로 전송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매체의 원고 승소율은 언론사 닷컴이 59.3%, 포털사이트가 55.6%로 높았고, 인터넷 신문은 30.0%였다.

〈표2-17〉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매체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조정성립	원고패	
일 간	중앙종합	19(25.7)		55(74.3)	74(100.0)
	지역종합	7(41.2)		10(58.8)	17(100.0)
	일반경제	3(25.0)		9(75.0)	12(100.0)
	소 계	29(28.2)		74(71.8)	103(100.0)
방 송	중 앙	40(46.5)		46(53.5)	86(100.0)
	지 방	4(26.7)		11(73.3)	15(100.0)
	민 방	1(100.0)			1(100.0)
	라 디 오	1(100.0)			1(100.0)
	케 이 블	1(20.0)		4(80.0)	5(100.0)

30)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7927 판결
31)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1409 판결
3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매체유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조정성립	원고패	
방 송	기 타	2(100.0)			2(100.0)
	소 계	49(44.5)		61(55.4)	110(100.0)
인 터 넷	인터넷신문	9(30.0)	1(3.3)	20(66.7)	30(100.0)
	닷 컴	16(59.3)		11(40.7)	27(100.0)
	포 털	5(55.6)		4(44.4)	9(100.0)
	기 타	2(50.0)		2(50.0)	4(100.0)
	소 계	32(45.7)	1(1.4)	37(52.9)	70(100.0)
주 간		26(68.4)	1(2.6)	11(29.0)	38(100.0)
월 간		14(46.7)		16(53.3)	30(100.0)
계 간				1(100.0)	1(100.0)
뉴스통신		10(66.6)		5(33.3)	15(100.0)
기 타				2(100.0)	2(100.0)
합 계		160(43.4)	2(0.5)	207(56.1)	369(100.0)

※ ( )안의 숫자는 %

6)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보도유형 중 빈도가 가장 많은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한 원고 승소율이 45.3%였고, 방송프로그램 중에서는 뉴스(30.8%)보다는 교양 · 정보(59.3%)나 시사 · 고발(50.0%) 프로그램에서 원고 승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칼럼이 인용된 사건은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도덕적 타락'이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33]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거의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명한 것 등이었다.[34]

드라마에 대한 판결 중에는 "역사드라마의 경우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이 있는 반면,[35]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의 경우에는 픽션드라마보다 그 명예훼손책임이 가중된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의 경우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주변인물을 통하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드라마를 방송하였다면 상당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면서 허구가 아닌 논픽션인 경우에는 진실성 및 상당성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해야 함을 설시하였다.[36]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3. 선고 2006가합85995 판결
3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5가합9609 판결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병합) 판결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5가합79818 판결

〈표2-18〉 보도유형별 처리결과

보 도 유 형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조정성립	원고패	
방송 외	스트레이트	91(45.3)	2(1.0)	108(53.7)	201(100.0)
	스트레이트/만평	1(50.0)		1(50.0)	2(100.0)
	스트레이트/사설	5(50.0)		5(50.0)	10(100.0)
	스트레이트/사설/만평			1(100.0)	1(100.0)
	스트레이트/사진	2(66.7)		1(33.3)	3(100.0)
	스트레이트/칼럼			1(100.0)	1(100.0)
	사 설	1(20.0)		4(80.0)	5(100.0)
	칼 럼	5(50.0)		5(50.0)	10(100.0)
	인터뷰			7(100.0)	7(100.0)
	인터뷰/사진	2(40.0)		3(60.0)	5(100.0)
	만 평			1(100.0)	1(100.0)
	사 진	2(40.0)		3(60.0)	5(100.0)
	기 타	1(100.0)			1(100.0)
	소 계	110(43.6)	2(0.8)	140(55.6)	252(100.0)
방 송	뉴 스	20(37.7)		33(62.3)	53(100.0)
	뉴스/시사 · 고발	7(70.0)		3(30.0)	10(100.0)
	시사 · 고발	4(50.0)		4(50.0)	8(100.0)
	시사 · 고발/교양 · 정보			2(100.0)	2(100.0)
	교양 · 정보	16(59.3)		11(40.7)	27(100.0)
	드라마	2(33.3)		4(33.3)	6(100.0)
	토 론			1(100.0)	1(100.0)
	기 타	1(10.0)		9(90.0)	10(100.0)
	소 계	50(42.7)		67(57.3)	117(100.0)
합 계		160(43.4)	2(43.4)	207(56.1)	369(100.0)

※ ( )안의 숫자는 %

3. 손해배상사건

1) 처리결과

손해배상사건 320건 중 원고가 승소(일부승소 포함)한 사건은 139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43.4%로 나타났다. 원고 승소율은 2007년에 51.4%로 2005년, 2006년에 비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사건 중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 두 건 있었는데 손해배상은 포기하고 인터뷰기사를 게재하거나 사과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건이었다.

〈표2-19〉 손해배상사건 연도별 처리결과

연 도	처 리 결 과			계
	원고일부승	조정성립	원고패	
2005	30(36.1)		53(63.9)	83(100.0)
2006	37(38.1)	2(2.1)	58(59.8)	97(100.0)
2007	72(51.4)		68(48.6)	140(100.0)
합 계	139(43.4)	2(0.6)	179(55.9)	320(100.0)

※ ( )안의 숫자는 %

2) 손해배상 청구액

빈도가 매우 적은 최고액 또는 최저액으로 인해 평균액이 많이 상승 또는 감소하는 경우 평균액으로 중심 경향을 파악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중간액과 최빈액을 함께 조사하였다. 중간액(Median)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값을, 짝수인 경우에는 한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최빈액(Mode)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한다.

배상액을 조사함에 있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5건은 제외하였다. 이는 손해배상을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인용액까지를 정해 명한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 승소한 139건 중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한 판결은 134건이었다.

청구액과 인용액은 원고 한 명에 해당하는 액수가 아니라 원고가 다수인 경우 합산한 금액 기준이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매체에 합산)한 매체별 금액 기준이다.

손해배상청구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를 함께 청구한 사건도 있었는데 판결에서 보도와 재산상의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없었고 모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분석결과 청구액 평균은 4억 4,100만원, 중간액과 최빈액은 각 1억원이었다.

1억원 이상인 억대의 청구가 201건(62.8%)이나 되었고, 최고 청구액은 157억 3,520만원이었다. 최고 청구액은 주가 폭락으로 50억원 상당의 자산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재산상 손해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었다.[37)]

연도별 청구액 평균은 2005년도에 7억 7,21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2006년에는 2억 3,474만원, 2007년에 4억 702만원 이었다.

〈표2-20〉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액

인용액(원) / 연 도	청구빈도	평균액	중간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2005년	83	772,166,667	200,000,000	1,000,000,000	20,000,000	10,800,000,000
2006년	97	234,743,243	114,000,000	100,000,000	10,000,000	1,000,000,000
2007년	140	407,025,373	100,000,000	100,000,000	10,000,000	15,735,200,000
합 계	320	441,202,985	100,000,000	100,000,000	10,000,000	15,735,200,000

3) 손해배상 인용액

인용액을 보면, 평균 2,108만원, 중간액과 최빈액은 각 1,000만원이었다. 인용액 평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빈액이 1,000만원인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

청구액 대비 인용액 평균은 4.8%였고, 청구 중간액 대비 인용 중간액과 청구 최빈액 대비 인용 최빈액은 각 10%로 나타나 청구액 중 인용되는 금액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의 언론소송판결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1,000만원 이하였으며 1억원 이상의 배상 판결은 1996년도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1심 판결에서 4억원을 인용한 것이었다.

위자료 인용 최고액은 1억원으로 공인의 피의사실을 다루면서 허위사실까지 보도한 사안에서 나왔는데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38)]

그 외 9천만원이 1건, 8천만원이 2건이었다(분석대상 판결 중 배상 최고액은 2억 6,500만원 이었는데 이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재산상 손해액배상으로 명한 것이었고, 저작인격권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기타 손해배상 사건으로 분류하였으므로 이 통계에서는 제외하였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사의 내용 및 게재경위, 표현방법, 언론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생활근거지,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재판과정에 나타난 피고들의 태도, 인터뷰 장면 방송시간,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의 정도, 원고의 나이와 경력, 공개된 원고들의 사생활의 내용과 침해의 정도, 원고들의 모습이 방영된 시간 및 프로그램,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계속 보도한 점, 주로 1면에 배치된 점, 사용된 어휘에 원고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드러난 점, 보도를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여지가 있는 점, 원고측이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무언가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한 점,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4784 판결(2007. 11. 14. 소취하)
38) 위 판결

〈표2-21〉 연도별 손해배상 인용액

연 도 \ 인용액(원)	인용빈도	평균액	중간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2005년	30	31,200,000	27,500,000	10,000,000	3,000,000	80,000,000
2006년	37	20,013,514	10,000,000	10,000,000	3,000,000	90,000,000
2007년	67	17,141,791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합 계	134	21,082,090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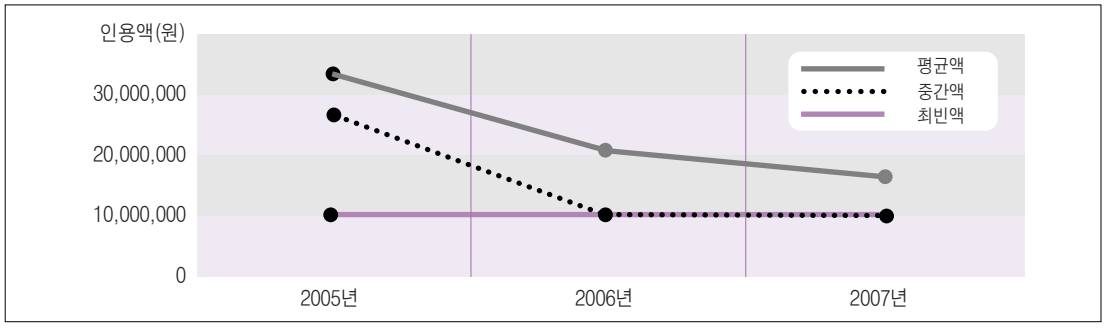

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배상액 분포를 보면 5백만원 초과~1천만원이 31.3%, 5백만원 이하가 23.1%로 배상액을 명한 판결 중 54.4%가 1천만원 이하로 결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배상액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도 28.4%로 적지 않았다.

〈표2-22〉 연도별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연 도 \ 인용액(원)	5백만 이하	5백만초과 ~1천만	1천만초과 ~2천만	2천만초과 ~3천만	3천만초과 ~5천만	5천만초과 ~7천만	7천만초과 ~1억	계
2005	3	6	5	6	3	6	1	30
2006	6	19	5	1	1	2	3	37
2007	22	17	13	6	5	2	2	67
합 계	31(23.1)	42(31.3)	23(17.2)	13(9.7)	9(6.7)	10(7.5)	6(4.5)	134(100.0)

※ ( )안의 숫자는 %

〈표2-23〉 손해배상사건 1심 청구액과 인용액

청구액(원) \ 인용액(원)	5백만 이하	5백만초과 ~1천만	1천만초과 ~2천만	2천만초과 ~3천만	3천만초과 ~5천만	5천만초과 ~1억	계
5백만초과~1천만	1	2					3
1천만초과~2천만	5						5
2천만초과~3천만	2	2	1				5
3천만초과~5천만		5	4				9
5천만초과~1억	7	8	5			2	22
1억초과	5	10	5	7	1	6	34
합 계	20(25.6)	27(34.6)	15(19.2)	7(9.0)	1(1.3)	8(10.3)	78(100.0)

※ ( )안의 숫자는 %

5) 침해유형별 인용액

원고의 침해 주장 내용 중 인용된 침해만을 대상으로 침해유형별 손해배상 인용액을 집계해 보니, 명예훼손이 평균 2,258만원, 중간액이 1,000만원이었고, 초상권침해가 평균 862만원, 중간액이 750만원, 사생활침해가 평균 1,400만원, 중간액이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초상권침해 중 최고의 배상액은 1,400만원 이었는데, 이는 친권자들의 동의 없이 신생아의 초상을 촬영한 언론사에 대해 신생아와 그 부모가 언론사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출산 장려 등의 공익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전혀 공적인 존재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 단지 프로그램의 공익성만을 내세워 동의 없이 원고들을 촬영하여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판시하고 원고 신생아와 그 어머니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한 것이었다.[39)]

이 사건 1심에서는 "외주제작을 의뢰한 방송사는 단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승인, 제작관련 지시, 검수 등을 할 수 있을 뿐 프로그램 제작이나 검수과정에서 프로그램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하는 등의 일일이 확인 점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사의 책임은 부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외주제작 방송의 경우라도 제작을 의뢰한 방송사에게 주의의무가 있다며 외주 제작사와 공동책임을 인정하였다.

사생활침해 사안 중 최고 배상액 3,000만원은 유명 연예인의 진실상당성 없는 결혼설을 보도한 뉴스통신사와 기자에게 돌아갔다. 재판부는 "결혼설 등에 대한 것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프라이버시권을 가진다"고 설시하고, "프라이버시권의 침해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도 하더라도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0)]

〈표2-24〉 손해배상사건 침해유형별 인용액

인용액(원) / 침해유형	인용빈도	평균액	중간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명 예	113	22,584,071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명예/초상	4	11,250,000	8,750,000	7,500,000	7,500,000	20,000,000
명예/초상/사생활	1	5,000,000				
명예/성명	1	7,000,000				
명예/사생활	1	70,000,000				
초 상	8	8,625,000	7,500,000	5,000,000	5,000,000	14,000,000
초상/사생활	1	7,000,000				
사생활	5	14,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30,000,000
합 계	134	21,082,090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 유형별로 인용액 평균을 보면, 공인의 경우 2,000만원대 초중반, 일반인은 1,260만이었고, 공적 인물 중

39)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나80294 판결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82527 판결

언론인은 비교적 적은 550만원이었다.

〈표2-25〉 손해배상사건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소송빈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개 인	공직자	49	27	55.1	22,703,704
	공적인물	65	20	30.8	26,350,000
	일반인	133	67	50.4	12,671,642
단 체	언론사	23	4	17.4	30,000,000
	지자체	2			
	기업체	20	4	20.0	40,000,000
	공공단체	2			
	종교단체	10	3	30.0	36,666,667
	시민단체	4	4	100.0	69,000,000
	교육기관	2	2	100.0	20,000,000
	기타 일반단체	8	1	12.5	10,000,000
	정 당	2	2	100.0	60,000,000
합 계		320	134	41.9	21,082,090

〈표2-26〉 손해배상사건 공적 인물의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인물유형	소송빈도	원고일부승	원고승소율(%)	인용액 평균
연예인	10	6	60.0	23,333,333
기업가	4	1	25.0	30,000,000
언론인	23	4	17.4	5,500,000
기타 유명인	28	9	32.1	37,222,222
합 계	65	20	30.8	26,350,000

7)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은(빈도 2건 이하는 제외) 주간신문이 64.9%로 가장 높았고, 월간지가 58.3%, 뉴스통신이 46.7%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인터넷매체는 41.7%, 지방종합일간지는 41.2%, 중앙방송은 40.0% 등이었다.

인용액 평균 현황은 지방방송이 6,275만원(중간액, 최빈액 각 7천만원)으로 월등히 높았고, 중앙종합일간지가 2,956만원, 중앙방송이 2,596만원이었다. 이어 뉴스통신 2,000만원, 월간지 1,992만원, 지방종합일간지 1,957만원, 인터넷매체 1,685만원 순이었다. 인용액은 언론사 단독의 부담액이 아닌 소속 언론인에게 명한 부담액까지를 합산한 액수이거나 연대하여 지게 되는 부진정 연대채무 금액이다.

〈표2-27〉 손해배상사건 매체유형별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 인용액(원)		빈 도	원고일부승	평균액	중간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일 간	중앙종합	58	16(27.6)	29,562,500	20,000,000	10,000,000	10,000,000	80,000,000
	지방종합	17	7(41.2)	19,571,429	10,000,000	10,000,000	2,000,000	80,000,000
	경제지	12	2(16.7)	6,000,000			2,000,000	10,000,000
	소 계	87	25(28.7)	26,909,091	20,000,000	10,000,000	2,000,000	80,000,000
방 송	중 앙	75	30(40.0)	25,966,667	17,500,000	20,000,000	5,000,000	100,000,000
	지 방	12	4(33.3)	62,750,000	70,000,000	70,000,000	32,000,000	79,000,000
	민 방	1	1(100.0)	10,000,000				
	라디오	1	1(100.0)	20,000,000				
	케이블	3	1(33.3)	7,000,000				
	기 타	2	2 (100.0)	10,000,000			6,000,000	14,000,000
	소 계	94	39(41.5)	27,871,795	20,000,000	20,000,000	5,000,000	100,000,000
주 간		37	24(64.9)	11,843,750	10,000,000	10000000	3,000,000	37,500,000
월 간		24	14 (58.3)	19,928,571	17,500,000	10,000,000	10,000,000	40,000,000
계 간		1						
뉴스통신		15	7(46.7)	2,000,000	30,000,000	11,285,714	5,000,000	
인터넷		60	25(41.7)	16,851,852	5,000,000	5,000,000	1,000,000	69,000,000
기 타		2						
합 계		320	134(41.9)	21,082,090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 ( )안의 숫자는 원고 승소율 (%)

8) 언론사와 소속 언론인의 원고승소율 및 손배배상액 비교

피고 중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액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 또는 언론인 단독 피고 사건을 살펴보니, 언론사와 담당 기자(프로듀서)에 대한 원고 승소율이 각 42.8%, 42.9%로 나타나 거의 동등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언론사 대표에 대한 원고 승소율은 6.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언론사와 담당 기자는 보통 연대 책임을 지는 반면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사 대표의 책임을 부정한 판례 중에는 원고가 상법 제401조에 근거해 언론사 대표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은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판결은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피고 언론사 대표는 "대표이사라는 사실 이외에 기사의 작성 · 보도와 관련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언론사와 담당 기자에게는 연대 책임을 물은 것과는 달리 대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41)]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6. 선고 2004가합82527 판결

인용액 평균은 언론사가 1,866만원, 언론사 대표 850만원, 담당 기자(프로듀서) 333만원으로 조사되어 불법행위 책임시 언론사는 가장 높게, 담당 기자(프로듀서)는 낮게, 언론사 대표는 그 중간 정도로 배상액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시 피고의 경제적 부담 능력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2-28〉 손해배상 피고 단독사건 원고승소율 및 인용액

인용액(원) / 피고단독유형	빈 도	원고일부승	평균액	중간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언론사 단독	138	59(42.8)	18,662,916	10,000,000	10,000,000	1,000,000	265,449,116
대표 단독	153	10(6.5)	8,500,000	8,750,000	10,000,000	5,000,000	15,000,000
담당 단독	7	3(42.9)	3,333,333	3,000,000		2,000,000	5,000,000

※ ( )안의 숫자는 원고 승소율(%)

9)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 320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188건(58.8%)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언론인이 면책되어 승소한 건수는 104건으로 언론인 승소율은 55.3%였다. 이는 손해배상청구사건 전체 피고 승소율 55.9%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치이다.

〈표2-29〉 손해배상사건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빈 도	언론인 피고 사건	처 리 결 과		
		언론인승	조정성립	언론인패
320	188(100.0)	104(55.3)	2(1.1)	82(43.6)

※ ( )안의 숫자는 %

10) 손해배상 기각 사유

보도가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거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논평이라도 모멸적인 의견표명으로서 그 표현의 한계를 이탈한 경우에 인정된다.

손해배상 기각 사유 중 가장 빈번한 것은공익성이 있는 보도에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였다. 진실성 또는 상당성만으로 기각된 경우가 110건(61.4%) 이었고, 기각 사유에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포함된 것은 138건(77.1%)에 달했다.

진실성과 관련해 판례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진실성을 인정하였다.[42)]

42) 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6나46010 판결 등

상당성이란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법리이다.[43] 이는 다른 민사사건과는 달리 언론사건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데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분석대상 판결들은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인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상당성을 거의 빠짐없이 판단하였는데, 공익성을 부정하여 손해배상을 인용한 사례는 없었고, 상당성 여부는 "피고 언론사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살펴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44]

또한 손해배상 기각 사유 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경우는 3건이고,[45]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각한 경우는 8건이었는데 기각 사유에 적법한 의견표명이 포함된 것은 모두 35건(19.6%)에 달했다.[46]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인 인물이라 하여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현실적 악의의 원칙'[47]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48]

〈표2-30〉 손해배상 기각사유

손해배상 기각사유	빈 도	비 율(%)
불 특 정	3	1.7
적법의견	8	4.5
적법의견/정당관심	5	2.8
정당관심	3	1.7
진실상당성(진실성 또는 상당성)	110	61.4
진실상당성/기타	5	2.8
진실상당성/불특정	1	0.6
진실상당성/적법의견	10	5.6
진실상당성/적법의견/정당관심	12	6.7
기 타	22	12.3
합 계	179	100.0

43)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4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2. 28. 선고 2006가단19101 판결 등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6가합74575 판결 등
46)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1409 판결 등
47) 공직자 또는 공적 인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언론보도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여부를 무모하게 무시(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원고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
48)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4.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1)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

우리 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 언론중재법 시행(2005. 7. 28.) 이후 소 제기된 사건 중 우리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은 28.8%로 3, 4건에 1건은 우리 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청구권별로 보면, 반론보도청구와 기사삭제청구가 각 80%로 매우 높았고, 정정보도청구가 50%, 손해배상청구가 23.1%,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가 24.2%를 기록했다. 기사삭제청구는 우리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나 조정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포함시킨 것이다.

한편,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의 소송사건 265건 중 조정신청을 거친 사건은 35건으로 조정신청 비율은 13.2%였다.

〈표2-31〉 조정을 거친 소송사건의 비율(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청 구 명	소송빈도	조정신청건수	조정신청비율(%)
정 정	10	5	50.0
정정/손해배상	33	8	24.2
정정/반론/손해배상	1		
정정/기사삭제	1		
반 론	5	4	80.0
반론/손해배상	3		
손해배상	39	9	23.1
기사삭제	5	4	80.0
기타 손해배상	4		
보도금지가처분	3		
합 계	104	30	28.8

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의 판결 비교

분석대상 판결 중 우리 위원회 조정를 거친 사건은 60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내렸던 사건은 20건으로, 소송결과 10건은 원고 일부승소하고 10건은 원고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청인 또는 양자가 모두 이의신청한 경우는 모두 원고 일부승소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한 사건은 원고 패소한 경우가 더 많았다. 조정불성립된 사건도 원고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이 판례로 우리 위원회의 정정보도 · 손배청구사건에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은 포기하도록 하고 언론사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반론보도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른 결과, 법원은 정정보도와 함께 2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조정결정 내용 중에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각 포털사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포함시켰으나, 판결에서는 이 부분은 피고 언론사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여 기각하였다.[49)]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27.선고 2007가합9017 판결

우리 위원회의 조정결과 합의된 사건이 판결에서 원고패소한 사건은, 우리 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합의가 성립된 이후 이와 별도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원고가 요청하는 반론보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포기하는 취지로 중재합의(현재의 조정합의를 말함)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중재합의가 가지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각하한 것이었다.[50]

〈표2-32〉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처리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 판결 결과	원고일부승	원고패	계
조정결정(신청인 이의신청)	2		2
조정결정(피신청인 이의신청)	7	10	17
조정결정(양자 이의신청)	1		1
조정불성립	14	25	39
합 의		1	1
합 계	24	36	60

3)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내린 손해배상사건 중 결정에 이의신청하여 자동 소제기된 사건은 27건이다. 이 중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9건, 기각은 3건, 취하 6건, 포기(조정성립) 1건 이었고, 8건은 계속중이다.

법원 인용액을 위원회 결정액과 비교해 보면 4건은 결정액보다 높았고, 4건은 반대로 결정액보다 낮거나 기각되었으며, 2건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으로 보면 10건 중 7건이 결정액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결정액과의 차이는 평균 100만원이었다.

〈표2-33〉 자동소제기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연 도 \ 구 분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액(원)	이의신청인	법원 인용액(원)	결정액 대비 인용액(원)
2005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교육희망	1,000,000	피신청인	0(기각)	△1,000,000
2006	이 ○ ○	프런티어타임즈	15,000,000	피신청인	5,000,000	△10,000,000
	이 ○ ○	노컷뉴스	1,000,000	피신청인	2,000,000	1,000,000
	이 ○ ○	여성중앙	10,000,000	피신청인	10,000,000	–
	채 ○ ○	국민일보	2,500,000	피신청인	1,500,000	△1,000,000
	오 ○ ○	KBS	1,000,000	피신청인	1,000,000	–
	이 ○ ○	Q채널	10,000,000	피신청인	7,000,000	△3,000,000
	정 ○ ○	MBC	0	신청인	1,000,000	1,000,000
2007	우 ○ ○	MBC	0	피신청인	20,000,000	20,000,000
	박 ○ ○	주간조선	2,000,000	신청인, 피신청인	5,000,000	3,000,000
평 균			4,250,000		5,250,000	1,000,000

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4가합12371 판결

〈표2-34〉 자동소제기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결정액과 판결인용액 분포

위원회 조정액(원) \ 판결인용액(원)	0 (기각)	1백만이하	1백만초과 ~2백만	2백만초과 ~3백만	3백만초과 ~5백만	5백만초과 ~7백만	7백만초과 ~1천만	2천만	계
0[51]		1						1	2
1백만이하	1	1	1						3
1백만초과~2백만					1				1
2백만초과~3백만			1						1
3백만초과~5백만									
5백만초과~7백만									
7백만초과~1천만						1	1		2
1천5백만					1				1
합 계	1	2	2		2	1	1	1	10

4)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청구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우리 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 2005. 7.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부터 2007년 말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사건 808건이었고, 그 중 조정결과 손해배상으로 합의 또는 결정된 사건이 114건 이었다. 우리 위원회 조정액은 법원의 인용액(표2-22 참조)에 비해 1/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청구액 평균은 소송청구액(표2-21 참조)에 비해 1/1.7(중간액은 1/5) 수준이었고, 조정액 평균은 인용액에 비해 1/6.5(중간액은 1/5) 수준이었다.

〈표2-35〉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청구사건 청구액 및 조정액

(2005. 7. 28.~2007. 12. 31.)

연 도	청 구 액(원)					조 정 액(원)				
	빈도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빈도	평균액	중간액	최저액	최고액
2005	141	278,180,778	50,000,000	500,000	4,150,000,000	21	3,452,381	3,500,000	1,000,000	10,000,000
2006	318	109,545,629	25,000,000	10,000	3,000,000,000	40	3,229,750	1,500,000	300,000	15,000,000
2007	349	400,663,571	20,000,000	1	100,000,000,000	53	3,133,462	2,000,000	490,000	10,000,000
합 계	808	263,045,280	20,000,000	1	100,000,000,000	114	3,226,814	2,000,000	300,000	15,000,000

〈표2-36〉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청구사건 조정액 분포

연도 \ 조정액(원)	100만 미만	100만~ 200만 미만	200만~ 500만 미만	500만~ 1,000만 미만	1,000만 이상	계
2005		4(19.0)	13(61.9)	3(14.3)	1(4.8)	21(100.0)
2006	7(17.5)	15(37.5)	11(27.5)	1(2.5)	6(15.0)	40(100.0)
2007	4(7.6)	19(35.8)	15(28.3)	10(18.9)	5(9.4)	53(100.0)
합 계	11(9.7)	38(33.3)	39(34.2)	14(12.3)	12(10.5)	114(100.0)

※ ( )안의 숫자는 %

51) 손해배상청구사건이었으나 반론보도로 조정결정되어 손해배상액은 0으로 표기함

5. 반론보도청구사건

1) 연도별 심급별 처리결과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사건은 2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 4건, 2006년 8건, 2007년 12건이었다. 원고 승소율은 45.8%로 전체 사건의 원고 승소율 43.4%보다 2.4%p 높게 나타났다. 특히 1심 원고 승소율이 72.7%로 전체 사건의 1심 원고 승소율 43.4%보다 무려 29.3%p나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고 승소율이 14.3%로 매우 낮았고, 상고심에서는 33.3%였다.

〈표2-37〉 반론보도청구사건 연도별 심급별 처리결과

연 도	1심			항소심			상고심			계		
	빈 도	원고 일부승	원고 승소율 (%)	빈 도	원고 일부승	원고 승소율 (%)	빈 도	원고 일부승	원고 승소율 (%)	빈 도	원고 일부승	원고 승소율 (%)
2005	4	3	75.0							4	3	75.0
2006	4	3	75.0				4	1	25.0	8	4	50.0
2007	3	2	66.7	7	1	14.3	2	1	50.0	12	4	33.3
합 계	11	8	72.7	7	1	14.3	6	2	33.3	24	11	45.8

2) 반론보도 기각 사유

반론보도 기각 사유를 보니,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것과, 요구하는 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이 반한다는 판단이 가장 많았다.

언론중재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원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반론보도 청구사건에 있어서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를 구별하는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서 원보도와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대법원은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래의 언론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의견표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52)]

또한 사실적 주장 관련 하급심 판례로 인용방송이라는 표시를 하였더라도 원 보도가 사실적 주장이면 이 역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던 반면,[53)]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된 토론자들의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는 해당 토론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54)]

5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5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7카합1833 판결
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카합2433 판결

대법원은 또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아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및 심리방법론 등에 관해서 설시하기도 하였다. 판결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요구하는 내용의 허위성의 인식이 청구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입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고 하였다.[55)]

그 밖에 반론보도청구의 제한요건으로서 이미 충분한 반론이 이루어진 경우와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된 경우[56)] 등이었다.

한편, 인터뷰를 거절한 사실이 반론 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인터뷰는 언론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터뷰 요청에 응했더라도 반론이 충분이 수용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터뷰를 거절한 사실이 반론보도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57)]

〈표2-38〉 반론보도청구사건 기각사유

반론기각 사유	빈 도	비 율(%)
사실적 주장이 아님	4	28.6
반론을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	2	14.3
반론문이 원보도와 관련성이 없음	1	7.1
반론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함	5	35.7
기 타	2	14.3
합 계	14	100.0

3)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와 법원의 판결 비교

우리 위원회가 반론보도 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이의신청하여 제소된 사건은 6건이었다. 이 중 4건이 인용되고 2건은 기각되었다. 또한 위원회에서 조정불성립결정을 내린 사건 7건은 2건이 인용되고 5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인용된 사건을 보면, 반론보도문이 위원회의 결정내용보다는 다소 감축된 경우가 있는 반면,[58)] 우리 위원회보다 2배 이상 길게 이루어지거나[59)]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청구취지가 절반 정도로 감축된 것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 거의 그대로 수용[60)]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은 반론보도 인용시 그 보도문의 길이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은 경향을 보여줬다.

5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56)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나100290 판결
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7카합1833 판결
58) 언론중재위원회 2006. 9. 12. 결정 2006서울조정333 반론청구 vs.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가합16537 판결
59) 언론중재위원회 2005. 6. 30. 결정 2005서울중재200 정정보도청구 vs.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23. 선고 2005카합1724 판결
60) 언론중재위원회 2005. 9. 12. 결정 05서울조정41 반론청구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카기9504 판결

한편, 법원 1심에서 인용되어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여 결국 기각된 사건이 있었는데 환송후심에서 재판부는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광고료 상당의 18,896,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하였다.[61)]

〈표2-39〉 반론보도청구사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와 판결결과 비교

판결결과 / 위원회 조정결과	원고일부승	원 고 패	계
조정결정(신청인 이의신청)	2		2
조정결정(피신청인 이의신청)	1	2	3
조정결정(양자 이의신청)	1		1
조정불성립결정	3	5	8
합 계	7	7	14

6.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은 법원은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때에는 보도할 보도문의 내용 · 크기 · 회수 ·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결 주문에 보도의 형식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1) 정정보도등의 보도 시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보도시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판결을 송달받은 후'와 '판결이 확정된 후'가 그것이다. 첫 번째 사례가 10건, 두 번째 사례가 30건으로 나타났다.

정정보도청구 소송 29건 중 '판결을 송달 받은 후'가 2건, '판결 선고 후'가 1건, '판결이 확정된 후'가 26건이었으며, 반론보도청구 소송 11건 중 '판결은 송달 받은 후'가 8건, '판결이 확정된 후'가 3건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현행 언론중재법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모두 가처분 절차에 의해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그러나 2006. 6. 29.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정정보도청구 소송은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마찬가지로 본안 소송 절차를 따르게 되었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의 민법상의 권리로서의 본안 절차,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위헌 결정 이전의 가처분 절차와 민법상의 본안 절차의 병행, 그리고 위헌 결정 이후 다시 본안 절차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분석대상 판결에 나타난 이행시기는 이 구분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본래 가처분은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따라서 가처분 절차를 따르는 소는 판결이 확정 전이라도 집행력이 생긴다.

61) 언론중재위원회 2001. 7. 30. 결정 2001서울중재257 반론보도청구 vs.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28135 판결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사건과 추후보도청구사건은 그 심판 절차가 잠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반론보도청구권 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여 창설된 단행적 가처분에 유사한 특수한 본안절차라고 본다.[62] 이 때문인지 반론보도를 인용하면서 이행시기를 '판결을 송달 받은 후'가 아닌 "판결이 확정된 후'라고 표기한 판결이 3건 있었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를 인용하면서 이행시기를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닌 '판결 선고 후'라고 표기한 것도 있었다.[63] 이 판결은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판결 선고 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라고 이분하여 명한 것이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정정보도문은 기사 게시일로부터 삭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 보도들과 동일한 사이트, 동일한 위치, 동일한 활자 및 모양으로 게재하라고 명하였다.

〈표2-40〉 정정보도등의 보도시기

보 도 시 기		빈 도	비 율(%)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보도되는 날	4	10.0
	1주일 이내	4	10.0
	2주일 이내		
	2주일 초과	2	5.0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보도되는 날	18	45.0
	3일 이내		
	5일 이내		
	1주일 이내	1	2.5
	2주일 이내	6	15.0
	2주일 초과	3	7.5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	2.5
판결 선고 후	최초로 보도되는 날	1	2.5
합 계		40	100.0

2) 그 외 보도 형식

정정보도등의 위치가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이루어지도록 판결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판결에 원 보도문의 위치나 순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정보도문등의 위치가 원 보도와 동일한지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전후 맥락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모두다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 또는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것으로 보였다.

보도 위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모두 1면 외에, 방송의 경우는 모두 프로그램 첫머리에 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의 경우는 제목은 메인에 게시하고 내용은 하이퍼링크 하도록 명한 것이 3건, 제목 · 내용 모두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한 것이 1건이었다. 보도 위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5건 있었다.

정정보도문의 제목으로 '정정보도문'으로 달도록 한 것이 16건, '…대한 정정보도문'이 5건, '바로잡습니다'가 7건, '알려드립니다'가 1건이었으며, 반론보도문의 제목으로는 '반론보도문'이 7건, '…에 대한 반론보

62) 언론법연구, 사법연수원, 2003, 11면
6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6가합14784 판결

도문'이 4건이었다. 청구시 보도문의 제목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도활자크기를 '제목은 28급 고딕체', '본문 부분은 14급 명조체',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등으로 대부분 명시하였으나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7건 있었다.

그 밖에 정기간행물의 기사 크기를 단수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가 3건, 상자기사 형태가 4건 있었으며, 보도 횟수 및 게재시간을 명시한 것이 62.5%, 명시하지 않은 것이 37.5%였다.

방송방법으로는 제목을 화면의 상단에 표시하고 그 아래에 본문을 표시하면서 진행자가 낭독하도록 한 사례가 60.8%로 가장 많았다.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42.5%로 가장 많았고, 300자 이하 25.0%, 400자 초과 500자 이하 12.5% 순이었다.

보도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여부를 두고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집행하기 곤란한 측면이 발생할 것이다.

〈표2-41〉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지면(프로그램)	빈 도	비 율(%)
원보도문과 같은 지면(프로그램)	40	100.0
원보도문과 다른 지면(프로그램)		
정정·반론 고정면/옴부즈맨 프로그램		
기 타		
명시하지 않음		
합 계	40	100.0

〈표2-42〉 정정보도등의 보도위치

구 분	보 도 위 치	빈 도	비 율(%)
정기간행물	1면		
	1면 외	18	45.0
방송프로그램	첫머리	13	32.5
	중간		
	끝		
	전반		
	후반		
인터넷	제목 · 내용 모두 초기화면에 게시	1	2.5
	제목은 메인에 게시하고 내용은 하이퍼링크	3	7.5
공 통	명시하지 않음	5	12.5
합 계		40	100.0

〈표2-43〉 정정보도등의 활자크기 명시여부

활자크기 명시 여부	빈 도	비 율(%)
명시함	33	82.5
명시하지 않음	7	17.5
합 계	40	100.0

〈표2-44〉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 도 제 목	빈 도	비 율(%)
정정보도문	16	40.0
반론보도문	7	17.5
…에 대한 정정보도문	5	12.5
…에 대한 반론보도문	4	10.0
바로잡습니다	7	17.5
알려드립니다	1	2.5
합 계	40	100.0

〈표2-45〉 정정보도등의 기사크기(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의 기사크기	빈 도	비 율(%)
2단	3	17.6
명시하지 않음	14	82.4
합 계	17	100.0

〈표2-46〉 정정보도등의 상자기사 명시여부(정기간행물)

상자기사 명시 여부	빈 도	비 율(%)
명시함	4	23.5
명시하지 않음	13	76.5
합 계	17	100.0

〈표2-47〉 정정보도등의 보도횟수(일수, 시간) 명시여부

보도 횟수(일수, 시간) 명시 여부	빈 도	비 율(%)
보도횟수 명시	22	55.0
일수 및 시간(인터넷의 경우)	3	7.5
명시하지 않음	15	37.5
합 계	40	100.0

〈표2-48〉 정정보도등의 방송방법(자막처리, 배경화면, 낭독 등)

방 송 방 법	빈 도	비 율(%)
제목 상단	1	5.6
제목 상단/자막으로 표시/음성으로 낭독	11	60.8
제목 우상단	1	5.6
제목 우상단/음성으로 낭독	1	5.6
제목 우상단/자막으로 표시/음성으로 낭독	1	5.6
제목 중상단/자막으로 표시/음성으로 낭독	1	5.6
자막으로 표시/음성으로 낭독	1	5.6
음성으로 낭독	1	5.6
합 계	18	100.0

〈표2-49〉 정정보도등의 보도본문 길이

보도본문의 길이	빈 도	비 율(%)
300자 이하	10	25.0
301~400자	17	42.5
401~500자	5	12.5
501~600자	2	5.0
601~700자	4	10.0
700자 초과	2	5.0
계	40	100.0

7. 사건의 기타 특성

판결에 나타난 기타 사건의 특성으로 보도의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가 10건, 원고를 공인 또는 공직자로 판단한 사례가 42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가 6건, 취재과정의 불법성을 언급한 사례가 7건, 피의사실 보도가 72건이었다.

보도의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로는 범죄보도에서 범인이나 혐의자의 신원을 밝힌 보도,[64]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보도,[65]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고, '양심불량', '양심실종'이란 표현을 사용한 보도[66] 등이었다.

판결의 판단에서 원고를 직접 공인이라고 인정한 원고의 유형으로는 유명 연예인, 전현직 국회의원, 언론사 대표, 서울시장 비서관, 국정원 정책특보,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자 시사전문가, 대통령의 조카, 법무부 차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정책실장 및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사람 등이었다. 반면, 평범한 정신과 의사는 공인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67]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보도에 "집단표시만 언급한 경우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68] 보도에 감청행위의 주체로 '검찰'이라고만 언급되었을 뿐 원고들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일반 독자들이 쉽게 원고들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원고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았고,[69] ○○경찰청 연금매장에서 카드깡이 행해졌고, ○○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경찰청 경무과에서 연금매장을 관리·감독하고 있고, 소속 경찰관들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70]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나20029 판결
65)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6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3672 판결
6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68)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69) 위 판결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14032 판결

취재과정의 불법성과 관련, 법원은 몰래 카메라 사용이나 몰래 녹음하는 행위를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음성을 변조하는 등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을 찾기 위하여 연기자를 환자로 위장시켜 다이어트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하였고 이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보도내용이 허위라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처리 되고 음성은 변조되었다는 이유로 초상권침해를 부정하였고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였다.[71] 또한 "피고 방송사가 피고 학생들과 원고 회사 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하는 등 그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방송사가 익명보도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상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72]

피의사실보도와 관련, 대법원은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73]

〈표2-50〉 사건의 기타 특성

사 건 특 성	빈 도	비 율(%)
보도의 공익성 부정	7	4.2
모멸적인 의견 표현으로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이탈	1	0.6
보도의 공익성 부정 / 취재과정의 불법성	3	1.8
원고를 공직자 또는 공적인물로 판단	16	9.7
원고를 공직자 또는 공적인물로 판단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2	1.2
원고를 공직자 또는 공적인물로 판단 / 피의사실보도	9	5.5
원고를 공직자 또는 공적인물로 판단 / 의혹제기보도	15	9.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4	2.4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 의혹제기보도	2	1.2
의혹제기보도 / 선거보도	6	3.6
피의사실보도	37	22.4
피의사실보도 / 통신기사 전재	16	9.7
취재과정의 불법성	7	4.2
선거보도	1	0.6
의혹제기보도	39	23.6
합 계	165	100.0

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가합9017 판결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선고 2005가합26111 판결
73)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4다61372 판결

제3장 형사사건 분석내용

1. 소송제기현황

1) 법원별 소송빈도

수집된 형사사건 판결 81건을 피고인 소속 매체별로 분류하여 집계한 매체별 빈도는 93건이다. 이 중 대법원이 19건(20.4%), 고등법원이 6건(6.5%), 지방법원이 68건(73.1%)이었다. 고등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5건, 대구고등법원이 1건이었다. 지방법원 중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4건이었다.

〈표3-1〉 법원별 소송빈도

법원		빈 도	비 율(%)
대법원(20.4%)		19	100.0
고등법원(6.5%)	서울고등법원	5	83.3
	대구고등법원	1	16.7
	소계	6	100.0
지방법원(73.1%)	서울중앙지방법원	16	23.5
	서울남부지방법원	14	20.6
	서울동부지방법원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	4	5.9
	의정부지방법원	1	1.5
	춘천지방법원	1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	1.5
	수원지방법원	4	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1.5
	청주지방법원	3	4.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	1.5
	부산지방법원	2	2.9
	창원지방법원	4	5.9
	전주지방법원	4	5.9
	광주지방법원	4	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	1.5
	소 계	68	100.0
합 계		93	100.0

2) 심급별 소송빈도

심급별로 보면 1심이 42건(45.2%), 항소심이 32건(34.4%), 상고심이 19건(20.4%)이었다. 항소심 중에는 고등법원이 6건, 지방법원 항소부가 26건이었다.

〈표3-2〉 심급별 소송빈도

심 급		빈 도	비 율(%)
1심		42	45.2
항 소 심	고 등 법 원	6	6.4
	지 방 법 원	26	28.0
	항 소 심 계	32	34.4
상 고 심		19	20.4
합 계		93	100.0

3) 죄명별 소송빈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형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동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61조의 벌칙,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동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 동법 제252조의 방송 · 신문 등 부정이용죄 등이다.

형사사건을 죄명별로 집계해 보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5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15.6%, 명예훼손이 12.5%, 공직선거법 위반이 9.4% 순이었다(죄명별 합산 기준).[74)]

〈표3-3〉 죄명별 소송빈도

죄 명	빈 도	비 율(%)
명예훼손	9	9.7
명예훼손/위증	1	1.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39	41.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	3	3.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사기	3	3.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직선거법위반	9	9.7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1	1.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8	8.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갈	5	5.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기타	1	1.1
정보통신망법위반	11	11.8
정보통신망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1	1.1
공직선거법위반	2	2.2
합 계	93	100.0

74) 여기서 죄명은 판결에서 인정된 죄가 아니라 검사가 재판을 청구한 공소 사실을 의미함.

〈표3-4〉 죄명별 소송빈도 (죄명별 합산)

죄 명	빈 도	비 율(%)
명예훼손	16	12.5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69	53.9
정보통신망법위반	20	15.6
공직선거법위반	12	9.4
기 타	11	8.6
합 계	128	100.0

4) 사건 피고인 구성

사건 피고인으로는 언론인이 84.9%로 대부분이었으나 언론인이 아닌 자(기고자, 정보제공자 및 신문 배포자, 성명서를 언론기관에 배포한 자, 신문을 복사하여 공공장소에 게시한 자 등)가 포함된 사건도 14.0%를 차지했다.

범죄행위의 주체는 보통 자연인이나, 피고인에 법인인 언론사가 포함된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60조에 규정된 양벌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3-5〉 사건 피고인 구성

사건 피고인 구성	빈 도	비 율(%)
언론인	78	84.9
언론인/기고자	3	3.2
언론인/배포자	4	4.3
언론인/기타	6	6.5
언론인/언론사	2	2.1
합 계	93	100.0

5) 매체별 피고인 구성

매체별 피고인 구성을 보면 담당 기자나 프로듀서가 57.0%를 차지했고, 언론사 대표가 22.6%, 편집장과 대표 · 주간 · 국장 · 부장이 각 5.4%, 주간과 국장이 각 4.3% 등이었다.

〈표3-6〉 매체별 피고인 구성

매체별 피고인 구성	빈 도	비 율(%)
담 당	53	57.0
대 표	21	22.6
편 집 장	5	5.4
대표/주간/국장/부장	5	5.4
주 간	4	4.3
국 장	4	4.3
언 론 사	1	1.1
합 계	93	100.0

민사사건과 달리 담당 기자(프로듀서) 외 부장, 국장, 주간, 대표 등은 기사의 취사 · 선택 · 배열에 관여한 책임자나 매체 운영자로서의 소송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기사를 직접 집필한 책임으로 피소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6) 피고인 소속 매체유형별 소송빈도

피고인 소속 매체유형으로는 주간신문이 39.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매체가 21.2%, 일간신문이 19.2%, 월간지가 10.6%, 방송이 8.7% 등이었다. 일간지 중에는 중앙지에 비해 지방지가 월등히 많았다(매체별 합산 기준).

〈표3-7〉 피고인 소속 매체유형별 빈도

매체유형	빈 도	비 율(%)
일 간	17	18.3
일간/인터넷	3	3.2
주 간	34	36.6
주간/인터넷	7	7.5
방 송	9	9.7
월 간	11	11.8
인터넷	11	11.8
인터넷/기타	1	1.1
합 계	93	100.0

〈표3-8〉 피고인 소속 매체 종류별 빈도 (매체별 합산)

매체유형	매체종류	빈 도	비 율(%)
일간지	중앙종합	4	3.8
	지역종합	16	15.4
	소 계	20	19.2
방 송	중 앙	3	2.9
	지 방	5	4.8
	케 이 블	1	1.0
	소 계	9	8.7
인터넷	인터넷신문	17	16.3
	언론사 닷컴	5	4.8
	소 계	22	21.2
주 간		41	39.4
월 간		11	10.6
기 타		1	1.0
합 계		104	100.0

7) 보도유형

보도유형은 스트레이트가 72.0%, 칼럼이 7.5%, 인터뷰가 4.3%, 시사 · 고발이 3.2%, 스트레이트 기사와 함께 만평 · 사설 · 칼럼이 공동으로 문제된 경우가 각 2.2%였다.

〈표3-9〉 보도 유형

기사(프로그램) 유형		빈 도	비 율(%)
방송 외	스트레이트	67	72.0
	스트레이트/만평	2	2.2
	스트레이트/사설	2	2.2
	스트레이트/칼럼	2	2.2
	인 터 뷰	4	4.3
	칼 럼	7	7.5
방 송	뉴 스	6	6.5
	시사 · 고발	3	3.2
합 계		93	100.0

2. 재판 결과

1) 죄명별 처리결과

죄명별 처리결과를 보면 유죄선고율이 72.7%, 무죄선고율이 24.2%, 공소기각이 3.1%로 조사되었다. 유죄선고율은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높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서 낮게 나타났다.

판례에 의하면 보도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통상 언론보도는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 범죄사실로 언론인이 유죄를 선고받는 건수가 52건이었고,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가 43건이나 되었다.

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여 당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유죄를 선고하거나,[75] 기자에게 고의성이 없어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할

75) 대법원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같은 법 제 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고, 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심리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지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하였다.[76] 분석 대상 판결 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이 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사건이 6건 있었다.

한 개의 명예훼손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형의 경중) 규정에 의거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다. 예를 들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으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사실에 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였다.[77]

또한 한 개의 명예훼손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합범인 경우에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거나(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하는 경우도 있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78]

한편, 공소기각한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였다.

〈표3-10〉 죄명별 처리결과

죄 명	판 결 결 과			계
	유 죄	무 죄	공소기각	
명예훼손	12(75.0)	4(25.0)		16(100.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52(75.4)	15(21.7)	2(2.9)	69(100.0)
정보통신망법 위반	9(45.0)	9(45.0)	2(10.0)	20(100.0)
공직선거법 위반	12(100.0)			12(100.0)
기 타	8(72.7)	3(27.3)		11(100.0)
합 계	93(72.7)	31(24.2)	4(3.1)	128(100.0)

※ ( )안의 숫자는 %

2) 심급별 처리결과

심급별 유죄선고율은 1심은 71.4%, 항소심은 84.4%, 상고심은 78.9%로 조사되었다.

심급별 결과에서는 수개의 죄 중에 한 개의 죄만 유죄로 선고되어도 유죄로 집계하였으므로 죄명별 선고율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7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4고단313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5고단 3244 판결
7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 9. 1. 선고 2006고합29 판결 등 참조
78) 수원지방법원 2007. 2. 14. 선고 2006고합586 판결 등 참조

〈표3-11〉 심급별 처리결과

심 급	처 리 결 과			계
	유 죄	무 죄	공소기각	
1심	30(71.4)	8(19.0)	4(9.5)	42(100.0)
항소심	27(84.4)	5(15.6)		32(100.0)
상고심	15(78.9)	4(21.1)		19(100.0)
합 계	72(77.4)	17(18.3)	4(4.3)	93(100.0)

※ ( )안의 숫자는 %

3) 유죄 선고 유형

유죄선고를 받은 72건의 형벌 유형을 살펴보면 징역이 4건(5.6%), 징역 및 벌금이 1건, 벌금이 56건(77.8%)이었으며, 징역 및 집행유예가 9건(12.5%), 벌금 및 선고유예가 2건(2.8%)이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한 건은 피해자 회사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해당 인터넷 기사를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판결한 것이었다.[79)]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형법 제62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표3-12〉 유죄 선고 유형

유죄선고유형		빈 도	비 율(%)
징 역	징 역	4	5.6
	징역/집행유예	9	12.5
징역+벌금	징역/집행유예/벌금	1	1.4
벌 금	벌 금	56	77.8
	벌금/선고유예	2	2.8
합 계		72	100.0

4) 징역기간 및 벌금액

징역기간은 1년이 42.9%로 가장 많았고, 6월이 35.7%, 8월이 21.4%였다. 또한 벌금액으로는 1백만원이 가장 많았으며(최빈액), 평균액은 371만원, 중간액은 275만원, 최고액은 1,500만원, 최저액은 50만원이었다.

징역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은 선거보도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79) 2006. 10. 1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고정 1882 판결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사전 선거운동기간 전에 상대 후보를 비난 · 폄훼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벌금 5백만원을 피고인인 인터넷신문 및 주간지의 편집국장에게 선고한 것이었다.[80)]

벌금 최고액은 지방지치단체장 후보에 출마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인 칼럼란에 허위사실을 작성 · 공표하고,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주간신문사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것이었다.[81)]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받은 고통,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82)]

〈표3-13〉 징역기간

연 도 \ 징역기간	6월	8월	1년	계
2005			3	3
2006	1	1	1	3
2007	4	2	2	8
합 계	5(35.7)	3(21.4)	6(42.9)	14(100.0)

※ ( )안의 숫자는 %

〈표3-14〉 벌금액 현황

연 도 \ 벌금액(원)	벌금선고빈도	평균액	중간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2005	7	6,083,333	5,000,000	5,000,000	1,500,000	10,000,000
2006	24	4,454,545	3,000,000	3,000,000	1,000,000	15,000,000
2007	28	2,632,143	2,000,000	500,000	500,000	10,000,000
계	59	3,717,857	2,750,000	1,000,000	500,000	15,000,000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5. 선고 2007고합817 판결
81) 대구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370 판결
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27. 선고 2006노590 판결 등 참조

〈표3-15〉 죄명별 법정 징역(또는 금고)기간 및 벌금액

죄 명	구 분	징역 또는 금고	벌 금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①사실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②허위사실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①비방목적+사실	3년 이하	700만원 이하
	②비방목적+허위사실	7년 이하	1천500만원 이하 (10년 이하 자격정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법 제61조 벌칙)	①비방목적+사실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
	②비방목적+허위사실	7년 이하	5천만원 이하 (10년 이하 자격정지)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250조)	①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허위사실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
	②당선되지못하게할 목적 +허위사실	7년 이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251조)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못하게할 목적+사실	3년 이하	500만원 이하
방송 · 신문등 부정이용죄 (공직선거법 252조)	①광고의 금지, 신문 · 잡지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금지, 허위 논평 · 보도의 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3년 이하	600만원 이하

5) 무죄 사유

무죄 선고 사유로는 형법 제310조 규정상의 위법성의 조각사유가 8건, 동법 제325조에 규정된 죄가 안 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가 9건이었다.

〈표3-16〉 무죄사유

무 죄 사 유	빈 도	비 율(%)
위법성의 조각	8	47.1
죄가 안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9	82.9
합 계	17	100.0

분석대상 판결 목록(민사 268건)

(선고일 순)

선고일자	법원명	판결번호	심급	청구명	청구별결과	피고명
2005-01-07	서울중앙	2003가합42560	1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조선일보사 외 4명
2005-01-07	서울중앙	2003가합86751	1심	손배	기각	㈜헤럴드미디어 외 2명
2005-01-11	서울고등	2004나20854	2심	손배	기각	㈜조선일보사 외 9명
2005-01-11	서울고등	2004나44089	2심	손배	기각	㈜오마이뉴스 외 1명
2005-01-12	서울중앙	2004가합43447	1심	손배	기각	파이낸셜뉴스신문㈜ 외 4명
2005-01-13	서울남부	2004카합2433	1심	반론	기각	한국방송공사
2005-01-14	대법원	2001다28619	3심	정정/손배	기각	㈜조선일보사 외 1명
2005-01-25	서울고등	2003나82497	2심	손배	인용	오○○ 외 1명
2005-01-26	서울중앙	2001가합68797	1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전○○ 외 3명
2005-01-26	서울중앙	2003가합3787	1심	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5명
2005-01-26	서울중앙	2004가합25043(반소)	1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박○○
2005-01-27	대법원	2004다12332	3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문화방송 외 2명
2005-01-27	대법원	2004다51863	3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문화방송 외 1명
2005-02-02	대전고등	2004나7161	2심	정정/손배	인용	대전문화방송㈜ 외 5명
2005-02-04	서울중앙	2001가합64429	1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한겨레신문㈜ 외 4명
2005-03-24	서울남부	2004카합3167	1심	반론	인용	한국방송공사
2005-03-30	대구지방	2004나13579	2심	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3명
2005-04-12	서울고등	2004나22065	2심	손배	인용	㈜뉴스앤조이 외 5명
2005-04-26	서울고등	2003나83292	2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문화방송 외 7명
2005-04-29	대법원	2005다13325	3심	손배	인용	오○○ 외 1명
2005-05-12	서울동부	2004가소65577	1심	손배	인용	㈜약국신문 외 1명
2005-06-01	서울중앙	2004가합72353	1심	기타손배	기각	전국언론노동조합 외 9명
2005-06-09	대법원	2005다6365	3심	손배	기각	㈜오마이뉴스 외 1명
2005-06-10	서울중앙	2002가합67395	1심	정정/손배	기각	㈜동아일보사 외 5명
2005-07-01	서울남부	2002가단29613	1심	손배	기각	㈜문화방송 외 2명
2005-07-06	서울중앙	2004가합82527	1심	손배	인용	㈜뉴시스 외 2명
2005-07-08	서울북부	2003가합6020	1심	정정/손배	기각	탁○○
2005-07-08	서울중앙	2004가합41137	1심	정정/손배	기각	㈜동아일보사 외 1명
2005-07-12	서울고등	2004나85882	2심	정정/손배	기각	㈜에스비에스 외 2명
2005-07-14	창원지방	2002가합3747	1심	손배	기각	최○○ 외 3명
2005-07-14	창원지방	2004가단55233	1심	손배	인용	㈜경남도민일보사 외 1명
2005-07-14	대법원	2004다64487	3심	손배	인용	㈜월간조선사
2005-07-15	대법원	2004다53425	3심	손배	인용	㈜인천일보 외 2사
2005-07-15	대법원	2005다22367	3심	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3명
2005-07-20	서울중앙	2004가합62875	1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동아일보사 외 2명
2005-07-21	서울남부	2005카합1743	1심	보도금지(가)	인용	㈜문화방송
2005-07-29	부산지방	2003가합21059	1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이○○ 외 1명
2005-07-29	서울중앙	2005카기5171	1심	반론	인용	한국교육방송공사
2005-08-12	서울중앙	2002가합52966	1심	손배	인용	오○○ 외 2명

선고일자	법원명	판결번호	심급	청구명	청구별결과	피고명
2005-08-12	서울중앙	2004가합47227	1심	손배	기각	㈜일요신문사 외 3명
2005-08-12	서울중앙	2004가합72896	1심	손배	기각	김○○ 외 2명
2005-08-16	서울중앙	2003가단407719	1심	손배	기각	㈜독립신문사 외 1명
2005-08-16	서울고등	2005나10977	2심	정정/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2005-08-17	서울중앙	2004가합79071	1심	손배	인용	㈜조선일보사 외 6명
2005-08-23	서울남부	2005카합1724	1심	반론	인용	한국방송공사
2005-08-24	부산지방	2004가합17712 2005가합8647(병합)	1심	정정/손배	기각	부산일보㈜ 외 4명
2005-08-24	서울중앙	2004가합48749	1심	손배	기각	㈜오마이뉴스 외 1명
2005-08-30	서울북부	2004가단59130	1심	손배	인용	탁○○
2005-08-30	서울고등	2004나65338	2심	손배	인용	(재)예음문화재단
2005-08-30	서울고등	2005나6923	2심	손배	기각	김○○ 외 2명
2005-08-31	서울중앙	2005가합12921	1심	손배	기각	㈜서울신문사 외 4명
2005-09-09	서울남부	2004가합19990	1심	정정/손배	인용	한국방송공사 외 1명
2005-09-22	서울남부	2005가합2739	1심	손배	인용	㈜문화방송 외 1사
2005-09-23	서울중앙	2004가합104533	1심	손배	기각	㈜동아일보사 외 6명
2005-09-27	서울고등	2004나86175	2심	손배	인용	㈜중앙일보사 외 4명
2005-10-07	서울중앙	2004가합46767	1심	정정/손배	기각	㈜문화방송
2005-10-11	서울고등	2005나16395	2심	정정/손배	기각	㈜문화방송 외 7명
2005-10-18	서울고등	2004나84063	2심	손배	인용	㈜조선일보사
2005-10-21	서울중앙	2004가합12586	1심	정정/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2명
2005-10-21	서울중앙	2004가합30267	1심	정정/손배	인용/기각	㈜조선일보사 외 4명
2005-10-21	서울남부	2005가합4834	1심	정정/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1명
2005-11-01	서울고등	2005나15514	2심	손배	기각	파이낸셜뉴스신문㈜외 4명
2005-11-01	서울고등	2005나18803	2심	손배	기각	㈜헤럴드미디어 외 2명
2005-11-02	서울중앙	2005가합24245	1심	정정/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3사
2005-11-09	서울중앙	2005가합10390	1심	기사삭제/손배/기타손배/해명서보도	기각/인용/인용/기각	㈜뉴시스
2005-11-10	대법원	2005다42705	3심	정정/손배	기각	㈜에스비에스 외 2명
2005-11-15	서울고등	2005나9090	2심	정정	인용	한국방송공사
2005-11-29	서울고등	2004나85035	2심	정정/손배	기각	한겨레신문㈜ 외 7명
2005-12-08	대법원	2005다51426	3심	정정/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2005-12-27	서울고등	2005나1997	2심	정정/손배	기각	㈜오마이뉴스 외 5명
2005-12-28	서울중앙	2005가합19052	1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문화방송
2006-01-17	서울서부	2004가단67298	1심	손배	기각	프레시안 외 1명
2006-01-17	서울고등	2005나51527	2심	기타손배	기각	전국언론노동조합 외 9명
2006-01-18	서울중앙	2004가단256802	1심	손배	기각	㈜조선일보사 외 2명
2006-01-18	대전지방	2004가합2605	1심	정정/손배	인용	㈜문화방송 외 1사
2006-01-18	서울중앙	2005가합10857	1심	손배	기각	곽○○
2006-01-20	서울중앙	2003가합70749	1심	정정/손배	기각	㈜경향신문사 외 3사
2006-01-20	서울중앙	2005가단170004	1심	손배	기각	㈜연합뉴스 외 4사
2006-01-20	서울중앙	2005가합26111	1심	정정/손배	기각	㈜에스비에스 외 6명

선고일자	법원명	판결번호	심급	청구명	청구별결과	피고명
2006-01-20	서울중앙	2005카기9504	1심	반론	인용	㈜법률신문사
2006-01-24	서울고등	2005나20936	2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전○○ 외 2명
2006-01-24	서울고등	2005나20943(반소)	2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박○○
2006-02-09	서울남부	2004가합7829	1심	손배	인용	㈜문화방송 외 3명
2006-02-09	제주지방	2005가합1120	1심	손배	인용	㈜제주일보사 외 1명
2006-02-10	대법원	2002다49040	3심	반론	기각	㈜동아일보사
2006-02-10	대전지방 홍성지원	2003가합735	1심	손배/정정광고	인용/기각	이○○ 외 1명
2006-02-15	부산지방	2005가합18545	1심	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1명
2006-02-15	부산지방	2005카합2383	1심	정정	기각	한국방송공사
2006-03-06	서울중앙	2006가합651	1심	보도금지(가)	기각	㈜조선일보사생활미디어 외 2사
2006-03-15	부산고등	2005나16010, 16027(병합)	2심	정정/손배	기각	부산일보㈜ 외 3명
2006-03-22	서울중앙	2005가합76567	1심	손배	기각	㈜에스비에스 외 6명
2006-03-22	서울고등	2005나77956	2심	손배	인용	탁○○
2006-03-23	대법원	2003다52142	3심	정정/손배	기각	㈜문화방송
2006-04-21	서울중앙	2005가합18950	1심	손배	기각	㈜오마이뉴스 외 3명
2006-04-28	부산고등	2003가합14601	2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이○○ 외 1명
2006-05-11	서울남부	2005가합8324	1심	손배	기각	정○○외 1명
2006-05-12	서울중앙	2004가단292358	1심	기타손배	기각	엔에이치엔㈜
2006-05-12	서울남부	2005가단72458	1심	손배	인용	㈜에스비에스
2006-05-12	서울중앙	2005가합74233	1심	손배	인용	이○○ 외 1명
2006-06-07	서울고등	2005나79754	2심	손배	기각	㈜서울신문사 외 4명
2006-06-07	서울고등	2005나90805	2심	손배	기각	㈜동아일보사 외 6명
2006-06-08	서울동부	2005가합14166	1심	손배	인용	한국방송공사
2006-06-21	서울고등	2005나106298	2심	정정/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1명
2006-06-22	서울남부	2005가합8911	1심	정정/손배	기각	㈜조선일보사 외 1명
2006-06-23	서울중앙	2004가합62370	1심	손배	인용	㈜문화방송 외 2명
2006-07-07	서울동부	2005가합14302	1심	손배	기각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외 5명
2006-07-12	서울중앙	2006가합7087	1심	손배/사실보도	기각	대한민국 ROTC중앙회 외 5명
2006-07-13	울산지방	2005가단30114	1심	손배	기각	㈜조선일보사
2006-07-14	대구지방	2005가소449079	1심	손배	기각	㈜한국교회문화사 외 1명
2006-07-19	서울고등	2005나102241	2심	정정/손배	인용	㈜조선일보사 외 1명
2006-07-20	수원지방안산지원	2005가단16980	1심	손배	인용	한국방송공사
2006-07-24	서울고등	2005나79747(조정)	2심	손배	포기(조정성립)	㈜독립신문사 외 1명
2006-08-16	서울고등	2005나73886	2심	손배	인용	㈜조선일보사 외 6명
2006-08-17	서울동부	2006가합2191	1심	반론/손배	인용	이○○
2006-08-23	서울고등	2005나61050	2심	정정/손배	기각	탁○○
2006-08-31	서울중앙	2006나6200	2심	손배	기각	㈜연합뉴스 외 4사
2006-09-07	대전고등	2003가합3644	2심	손배/정정광고	인용/기각	이○○ 외 1명
2006-09-08	서울남부	2005가단18300	1심	손배	인용	엔에이치엔㈜ 외 1사
2006-09-11	대법원	2006다42276	3심	손배	기각	㈜서울신문사 외 4명

선고일자	법원명	판결번호	심급	청구명	청구별결과	피고명
2006-09-21	서울서부	2006가소63201	1심	기타손배	인용	㈜레이소다
2006-09-26	서울중앙	2003가단379883	1심	손배	기각	㈜문화방송 외 1명
2006-09-27	서울남부	2005가단59554	1심	손배	기각	㈜문화방송 외 2명
2006-10-11	서울고등	2006나20810(조정)	2심	손배	포기(조정성립)	프레시안 외 1명
2006-10-11	서울고등	2006나29589	2심	손배	인용	㈜문화방송 외 3명
2006-10-11	서울고등	2006나991	2심	정정/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3명
2006-10-12	대전고등	2006나3538	2심	정정/손배	기각	㈜문화방송 외 1사
2006-10-12	서울남부	2006나4583	2심	손배	인용	㈜에스비에스
2006-10-13	서울중앙	2006가합71378	1심	정정/손배	기각	와이티엔 외 2명
2006-10-18	서울동부	2005나3672	2심	손배	인용	㈜약국신문 외 1명
2006-10-25	서울중앙	2005가단355539	1심	손배	기각	정○○ 외 3명
2006-11-01	서울중앙	2005가합114032	1심	손배	인용	㈜문화방송 외 3명
2006-11-01	서울중앙	2006가합75509	1심	정정	인용	㈜문화방송
2006-11-08	서울중앙	2005가합90013	1심	정정/손배	기각	한겨레신문㈜ 외 2명
2006-11-08	서울고등	2005나76373	2심	손배	인용	오○○ 외 2명
2006-11-08	서울고등	2005나82460	2심	손배	기각	㈜오마이뉴스 외 1명
2006-11-09	서울남부	2005가합18444	1심	손배	인용	㈜문화방송
2006-11-15	서울남부	2005가단65054	1심	손배	인용	지○○ 외 2명
2006-11-16	서울고등	2006나21622	2심	손배	기각	곽○○
2006-11-17	광주고등	2006나298	2심	손배	기각	㈜제주일보사 외 1명
2006-11-22	서울고등	2004나65703	2심	손배	인용	원○○ 외 2명
2006-11-23	대법원	2003다28439	3심	반론	인용	㈜동아일보사
2006-11-23	대법원	2004다50747	3심	반론	기각	㈜동아일보사 외 1사
2006-11-29	서울중앙	2005가단286190	1심	손배	인용	한국방송공사 외 3명
2006-11-29	서울중앙	2006가합36290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문화방송 외 1사
2006-11-29	서울고등	2006나2355	2심	기사삭제/손배/기타손배/해명서보도	기각/인용/인용/기각	㈜뉴시스
2006-11-30	서울중앙	2006가단98871	1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일요신문사
2006-12-01	부산고등	2006나7242	2심	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1명
2006-12-01	부산고등	2006나7259	2심	정정	기각	한국방송공사
2006-12-08	서울중앙	2006가합75455	1심	반론	기각	㈜조선일보사
2006-12-08	서울중앙	2006가합75493	1심	정정	기각	㈜조선일보사
2006-12-15	광주지방	2006가합892	1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광주방송 외 1명
2006-12-20	서울고등	2005나64684	2심	정정/손배	인용	㈜동아일보사 외 2명
2007-01-10	서울중앙	2005가합84414	1심	정정/손배	기각	㈜동아일보사 외 5명
2007-01-10	서울고등	2005나100290	2심	반론	기각	탁○○
2007-01-10	서울남부	2006가다56477	1심	손배	인용	㈜문화방송
2007-01-10	서울고등	2006나48160	2심	기타손배	기각	엔에이치엔㈜
2007-01-23	대전지방	2005가단52747	1심	손배	기각	(주)대전방송 외 1명
2007-01-24	서울중앙	2006가합24129	1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조선일보사생활미디어 외 2사
2007-01-24	서울고등	2006나28135	파기환송심	반론	기각	㈜동아일보사
2007-01-24	서울고등	2006나56918	2심	손배	기각	정○○ 외 1명

선고일자	법원명	판결번호	심급	청구명	청구별결과	피고명
2007-01-25	대법원	2005다11770	3심	정정/손배	인용	대전문화방송㈜ 외 5명
2007-01-25	대법원	2005다4307	3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문화방송 외 2명
2007-02-07	서울고등	2006나46010	2심	손배	기각	㈜오마이뉴스 외 2명
2007-02-22	대법원	2006다87217	3심	손배	기각	㈜제주일보사 외 1명
2007-02-27	서울중앙	2003가단202945	1심	손배	인용	이○○ 외 1명
2007-03-14	서울고등	2005나69689	2심	정정/손배	기각	㈜동아일보사 외 1명
2007-03-15	대법원	2006다82595	3심	정정/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3명
2007-03-16	대법원	2006다86924	3심	손배	인용	원○○ 외 2명
2007-03-17	대법원	2006다87927	3심	손배	기각	곽○○
2007-03-28	서울중앙	2006가합75462	1심	정정	기각	㈜동아일보사
2007-03-30	대법원	2006다83833	3심	손배	인용	오연호 외 2명
2007-04-11	서울고등	2005나21403	2심	정정/손배	인용	㈜조선일보사 외 4명
2007-04-12	서울남부	2006가합12856	1심	정정	인용	한국방송공사
2007-04-12	서울남부	2006가합16537	1심	반론	인용	㈜문화방송
2007-04-19	서울서부	2006나8560	2심	기타손배	인용	㈜레이소다
2007-05-04	서울남부	2006가합9577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인용	㈜문화방송
2007-05-09	서울고등	2004나83398	2심	정정/손배	인용	㈜월간조선사 외 7명
2007-05-09	서울중앙	2006가합6661 (2006가합73756과 병합)	1심	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2007-05-09	서울중앙	2006가합73138	1심	손배	기각	㈜문화방송 외 7명
2007-05-11	대법원	2007다18348	3심	반론	기각	탁○○
2007-05-18	서울중앙	2005가합64571	1심	손배	인용	엔에이치엔㈜ 외 3명
2007-05-23	서울중앙	2005가합103087	1심	손배	기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희망)
2007-05-23	서울중앙	2006가단230163	1심	손배	인용	㈜중앙일보
2007-05-23	서울중앙	2006가합85995	1심	정정/손배	인용	㈜조선일보사 외 1명
2007-05-31	대법원	2007다18423	3심	손배	기각	엔에이치엔㈜
2007-06-01	대법원	2004다61372	3심	손배	기각	㈜에스비에스 외 6명
2007-06-07	창원지방	2006가합4359	1심	손배	기각	김○○ 외 2명
2007-06-13	서울중앙	2005가합98321	1심	손배	인용	오○○ 외 7명
2007-06-13	서울중앙	2006가합88420	1심	손배	인용	㈜뉴시스 외 4명
2007-06-13	서울중앙	2006가합8882	1심	손배	인용	㈜프런티어타임스
2007-06-13	서울고등	2006나89116	2심	반론/손배	인용	이○○
2007-06-14	대법원	2006다21491	3심	정정/손배	기각	부산일보㈜ 외 2명
2007-06-14	창원지방	2007가합170	1심	정정/손배	기각	㈜연합뉴스
2007-06-14	창원지방	2007가합187	1심	정정/손배	기각	마산문화방송㈜
2007-06-20	서울중앙	2005가합79818	1심	정정/손배	인용	㈜문화방송 외 6명
2007-06-21	대구지방	2006나11409	2심	손배	기각	㈜한국교회문화사 외 1명
2007-06-21	서울남부	2007나359	2심	손배	인용	지○○ 외 1명
2007-06-27	서울중앙	2006가합70429	1심	손배	기각	한겨레신문㈜ 외 4명
2007-06-28	창원지방	2006가합1985	1심	손배	기각	김○○ 외 3명
2007-06-29	대법원	2005다55510	3심	손배	인용	(재)예음문화재단

선고일자	법원명	판결번호	심급	청구명	청구별결과	피고명
2007-07-02	창원지방김해시법원	2006가소37718	1심	손배	인용	강○○
2007-07-02	창원지방김해시법원	2006가소45962	1심	손배	인용	㈜스포츠서울미디어
2007-07-02	창원지방김해시법원	2006가소45979	1심	손배	인용	㈜미디어칸
2007-07-05	서울남부	2004가합12371	1심	정정/손배	기각	㈜에스비에스 외 1명
2007-07-11	서울중앙	2004가합70203	1심	손배	기각	오○○ 외 4명
2007-07-11	서울중앙	2006가합36993	1심	정정/손배	인용	㈜월간조선사 외 2명
2007-07-11	서울중앙	2006가합6329	1심	정정/손배	인용	㈜월간조선사 외 2명
2007-07-11	서울고등	2006나112566	파기환송심	반론	기각	㈜동아일보사 외 1사
2007-07-12	대법원	2006다65620	3심	손배	인용(파기)	㈜연합뉴스 외 4사
2007-07-18	서울중앙	2006가합102784	1심	정정	기각	㈜조선일보사
2007-07-20	대전지방	2006가단79121	1심	손배	기각	대전문화방송㈜ 외 1명
2007-07-25	서울중앙	2006가합108300	1심	손배	인용	중앙방송㈜
2007-07-25	서울중앙	2006나40098	2심	손배	기각	㈜에스비에스 외 6명
2007-07-25	서울고등	2006나80294	2심	손배	인용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외 5명
2007-07-26	서울남부	2007카합1833	1심	반론(가)	인용	㈜문화방송
2007-08-10	서울서부	2006가합11012	1심	손배	기각	㈜세계일보사 외 2명
2007-08-22	서울중앙	2006가합51497	1심	정정/손배	기각/인용	㈜중앙엠앤비
2007-08-22	서울고등	2006나69013	2심	손배	인용	㈜문화방송 외 2명
2007-08-29	서울중앙	2006가합74575	1심	정정/손배	기각	㈜동아일보사
2007-08-29	서울중앙	2006가합89416 2006가합89461(병합)	1심	정정/손배	인용	(재)기독교방송 외 2명
2007-08-29	서울중앙	2006가합93415	1심	정정/손배	인용	㈜헤럴드미디어
2007-09-05	서울고등	2004나54819	2심	손배	기각	김○○ 외 1명
2007-09-05	서울남부	2006가단20430	1심	손배	기각	㈜문화방송 외 3명
2007-09-05	서울중앙	2007가합4733	1심	정정/손배	기각	이○○ 외 1사
2007-09-06	대법원	2007다2268	3심	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1명
2007-09-06	대법원	2007다2275	3심	정정	기각	한국방송공사
2007-09-07	서울서부	2006가합11630	1심	정정/손배	기각	한겨레신문㈜
2007-09-07	서울서부	2006가합11647	1심	정정/손배	기각	한겨레신문㈜
2007-09-19	대구지방안동지원	2006가단4557	1심	손배	기각	안동문화방송㈜ 외 1명
2007-09-19	서울고등	2006나106066	2심	정정/손배	기각	(주)와이티엔 외 2명
2007-09-19	서울고등	2006나98394	2심	손배	기각	㈜문화방송 외 2명
2007-10-04	수원지방안산지원	2005가합4335	1심	손배	인용	백○○ 외 3명
2007-10-05	수원지방	2007가합10514	1심	손배	인용	㈜평화일보 외 1명
2007-10-10	서울중앙	2006가합110655	1심	정정	기각	㈜문화일보
2007-10-10	서울중앙	2007가합14914	1심	손배	기각	이○○ 외 1명
2007-10-10	서울중앙	2007가합1826	1심	손배	기각	설○○ 외 5명
2007-10-11	대법원	2007다48479	3심	반론/손배	인용	이○○
2007-10-11	대법원	2007다52744	3심	손배	기각	㈜한국교회문화사 외 1명
2007-10-18	수원지방	2006가합17426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경인일보 외 2명
2007-10-18	인천지방부천지원	2007가단18616	1심	손배	기각	㈜동아일보 외 2사

선고일자	법원명	판결번호	심급	청구명	청구별결과	피고명
2007-10-24	서울중앙	2005가합118409	1심	정정/손배	인용	㈜오마이뉴스 외 1명
2007-10-25	서울남부	2006가합11556	1심	손배	기각	한국방송공사 외 1명
2007-10-25	서울남부	2007가합4555	1심	정정/손배	인용	㈜문화방송
2007-10-25	서울중앙	2007나20029	파기환송심	손배	인용	㈜연합뉴스 외 4사
2007-10-31	서울고등	2006나103531	2심	손배	인용	정○○ 외 3명
2007-11-01	서울남부	2006가합14784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SBS
2007-11-06	서울남부	2007가합13887	1심	정정/손배	기각	㈜문화방송 외 1명
2007-11-07	서울중앙	2006가합98182	1심	정정	기각	㈜조선일보사
2007-11-07	서울중앙	2007가합33984	1심	정정	인용	㈜동아일보
2007-11-14	서울중앙	2006가합46051 2006가합75448	1심	정정/손배	기각	㈜독립신문사
2007-11-28	서울고등	2007나10025	2심	정정	기각	㈜조선일보사
2007-11-28	서울고등	2007나17460	2심	정정/손배	기각	㈜동아일보사 외 5명
2007-11-29	서울중앙	2007가단16210	1심	손배	인용	㈜서울신문사 외 1사
2007-12-05	서울중앙	2007가합42100	1심	손배	인용	㈜한국일보사 외 8명
2007-12-11	서울고등	2006나72026	2심	손배/사실보도	기각	대한민국 ROTC중앙회 외 5명
2007-12-12	서울고등	2006나117318	2심	정정/손배	기각	한겨레신문㈜외 2명
2007-12-12	서울중앙	2007가합23390	1심	손배	기각	㈜문화방송 외 3명
2007-12-12	서울중앙	2007가합35157	1심	손배	인용	㈜뉴시스 외 1명
2007-12-13	대전지방	2007나9762	2심	손배	기각	대전문화방송㈜ 외 1명
2007-12-14	광주지방	2007가합4624	1심	손배/사과문	기각	강○○ 외 2명
2007-12-14	창원지방	2007나7441	2심	손배	인용	강○○
2007-12-14	창원지방	2007나7861	2심	손배	인용	㈜경향닷컴
2007-12-14	창원지방	2007나7878	2심	손배	인용	㈜스포츠서울미디어
2007-12-26	서울서부	2005가합9609	1심	손배	인용	㈜씨비아이뉴스 외 4명
2007-12-26	서울중앙	2007가합6630	1심	정정/손배	인용	㈜동아일보사
2007-12-27	서울남부	2007가합9017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문화방송
2007-12-27	대법원	2007다29379	3심	정정/손배	인용	㈜조선일보사 외 4명
2007-12-28	서울서부	2006가단19101	1심	손배	인용	㈜세계일보 외 1명

※ 청구명에서 '손배'는 '손해배상', '(가)'는 '가처분'을 각 줄인말임.

분석대상 판결 목록(형사 81건)

선고일자	법원명	판 결 번 호	심 급	죄명	죄명별결과	피고인소속 매체명
2005-01-12	전주지방	2003고단2838	1심	명예훼손	무죄	전주MBC
2005-01-21	서울고등	2004노651	2심	출판명예/공직선거	유죄	한국논단
2005-02-02	서울중앙	2004노883	2심	출판명예/공갈	유죄	외식경제신문
2005-02-03	서울남부	2002고단5514	1심	출판명예	무죄	KBS노보
2005-04-28	수원지방	2004노5385	2심	정보통신	유죄	성남뉴스넷
2005-05-13	대법원	2005도1421	3심	출판명예/공직선거	유죄	한국논단
2005-05-19	서울중앙	2005고단972	1심	출판명예/정보통신	무죄/유죄	일요서울신문
2005-05-31	대전지방천안지원	2005고단453	1심	출판명예/기타	유죄	중앙경찰신문
2005-08-23	서울중앙	2005노1571	2심	출판명예/정보통신	무죄(유죄)	일요서울신문
2005-08-25	서울중앙	2004고정272	1심	출판명예	무죄	조선일보
2005-11-04	서울동부	2005고정759	1심	출판명예	유죄	기독교신문
2005-11-23	수원지방안산지원	2003고단2748	1심	출판명예/정보통신	유죄	뉴스앤조이
2006-01-13	서울중앙	2005고정6363	1심	출판명예	유죄	교회와이단
2006-01-26	전주지방	2005고단1203	1심	출판명예/명예훼손	무죄/유죄	새전북신문
2006-02-08	서울서부	2004고단3130	1심	명예훼손	유죄	세계일보
2006-02-09	서울동부	2005노1168	2심	출판명예	유죄	기독교신문
2006-03-20	수원지방	2005노4596	2심	출판명예/정보통신	유죄	뉴스앤조이
2006-04-04	창원지방	2005고단1103	1심	출판명예	유죄	경남매일
2006-04-14	광주지방	2005고단3244	1심	명예훼손	유죄	광주MBC
2006-04-14	대법원	2006도1396	3심	출판명예	유죄	기독교신문
2006-04-18	서울중앙	2006노229	2심	출판명예	유죄	교회와이단
2006-04-27	서울중앙	2005고단2782	1심	출판명예	유죄	교회연합신문
2006-05-08	서울남부	2005고단3588	1심	출판명예	유죄	한국방송공사
2006-05-12	전주지방	2006노195	2심	출판명예	유죄	새전북신문
2006-06-09	대법원	2005도6497	3심	출판명예/정보통신	무죄(유죄)	일요서울신문
2006-06-15	대법원	2006도2634	3심	출판명예	유죄	교회와이단
2006-08-11	서울남부	2005고단4024	1심	출판명예	기각	MBC
2006-08-25	대법원	2006도2066	3심	출판명예/정보통신	유죄	뉴스앤조이
2006-09-01	대구지방상주지원	2006고합29	1심	출판명예/공직선거	유죄	문경신민신문
2006-09-20	서울중앙	2006노1292	2심	출판명예	무죄(유죄)	교회연합신문
2006-10-13	대법원	2005도3112	3심	정보통신	무죄	성남뉴스넷
2006-10-13	서울남부	2006고정1882	1심	출판명예	유죄	운송신문
2006-10-20	의정부지방	2006고합141	1심	공직선거	유죄	양주신문
2006-10-26	서울서부	2006노198	2심	명예훼손	유죄	세계일보
2006-10-27	서울중앙	2006고합130 2006고합263(병합)	1심	정보통신	무죄(유죄)	오마이뉴스
2006-11-01	광주지방순천지원	2006고단476	1심	출판명예/명예훼손/사기	유죄	광주매일
2006-11-02	대구고등	2006노370	2심	출판명예/공직선거	유죄	문경신민신문
2006-11-09	광주지방	2006노581	2심	명예훼손	유죄	광주MBC

선고일자	법원명	판 결 번 호	심 급	죄명	죄명별결과	피고인소속 매체명
2006-11-16	창원지방	2006노642	2심	출판명예	유죄	경남매일
2006-11-24	대법원	2004도7501	3심	출판명예	무죄	미디어오늘
2007-01-02	수원지방	2006노3562	파기환송심	정보통신	무죄	성남뉴스넷
2007-01-09	서울남부	2006고단2155	1심	출판명예/공갈	유죄	약사신문
2007-01-25	서울고등	2006노2605	2심	공직선거	유죄	양주신문
2007-02-06	춘천지방원주지원	2005고정4	1심	출판명예	유죄	상지대학보
2007-02-08	부산지방	2005고단4049	1심	출판명예	유죄	월간부산
2007-02-14	수원지방	2006고합586	1심	출판명예/공직선거	유죄	용인신문
2007-02-22	대법원	2006도6867	3심	출판명예	무죄(유죄)	교회연합신문
2007-03-08	광주지방	2006노1816	2심	출판명예/명예훼손/사기	유죄	광주매일
2007-04-11	청주지방충주지원	2007고정10	1심	출판명예	유죄	대전일보
2007-04-27	서울남부	2006노590	2심	출판명예	유죄	한국방송공사
2007-05-02	서울고등	2007노641	2심	출판명예/공직선거	유죄	용인신문
2007-05-03	서울남부	2006고정3234	1심	출판명예/명예훼손	유죄	경찰자치신문
2007-05-10	대법원	2006도8544	3심	명예훼손	유죄	광주MBC
2007-05-30	서울서부	2006고단2192	1심	출판명예	무죄	한겨레21
2007-05-31	대법원	2007도2301	3심	출판명예/명예훼손/사기	유죄	광주매일
2007-06-13	서울고등	2006노2570	2심	정보통신	무죄(유죄)	오마이뉴스
2007-06-14	광주지방해남지원	2007고정87	1심	출판명예	유죄	아시아일보
2007-06-15	대법원	2004도4573	3심	명예훼손	무죄	월간중앙
2007-06-20	서울중앙	2007고단843	1심	정보통신	기각	오마이뉴스
2007-06-22	춘천지방	2007노183	2심	출판명예	유죄	상지대학보
2007-06-27	서울남부	2007노106	2심	출판명예/공갈	유죄	약사신문
2007-06-28	청주지방	2007고정296	1심	출판명예/정보통신	무죄	청주교차로노조소식지
2007-07-12	대법원	2007도4072	3심	출판명예/공직선거	유죄	용인신문
2007-08-01	부산지방	2007노770	2심	출판명예	무죄	월간부산
2007-08-07	청주지방	2006고정275	1심	출판명예/정보통신	유죄	충청리뷰
2007-08-23	대법원	2005도1446	3심	출판명예/공갈	유죄/무죄	외식경제신문
2007-08-31	광주지방	2007고정971	1심	정보통신	유죄	H-타임뉴스
2007-09-07	수원지방여주지원	2007고합59	1심	출판명예/공직선거	유죄	평화일보
2007-09-13	서울중앙	2007노1804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월간중앙
2007-10-11	대법원	2007도5690	3심	출판명예	유죄	상지대학보
2007-10-17	서울중앙	2007고정3117	1심	정보통신	기각	CNBNEWS
2007-10-25	서울중앙	2007고합817	1심	정보통신/공직선거	유죄	CNBNEWS
2007-10-25	서울서부	2007노857	2심	출판명예/모욕	무죄	한겨레21
2007-10-25	대법원	2007도6806	3심	출판명예	무죄	월간부산
2007-10-31	서울중앙	2006고정4693	1심	출판명예	기각	mbn
2007-11-14	서울남부	2005노272	2심	출판명예	유죄	KBS노보
2007-11-15	대법원	2007도5970	3심	출판명예/공갈	유죄	약사신문
2007-11-28	서울남부	2007노720	2심	출판명예/명예훼손	유죄	경찰자치신문
2007-12-05	서울남부	2006고단3070	1심	출판명예	무죄	노씨종보

선고일자	법원명	판 결 번 호	심 급	죄명	죄명별결과	피고인소속 매체명
2007-12-14	대법원	2006도7998	3심	명예훼손	유죄	세계일보
2007-12-27	대법원	2006도3619	3심	출판명예	유죄	새전북신문

※ 죄명에서 '출판명예'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 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각 줄인말임.

※ 죄명별 결과에 '무죄(유죄)'라고 표기한 것은 기소된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경우임.